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

2021. 7. 14.

증 권 선 물 위 원 회

1. 일 시 : 2021년 7월 14일(수) 14:00~20:13

2. 회의방식 : 온-나라 PC 영상회의

3. 출석위원

도 규 상 위 원 장

(의결 제152호, 제153호)

이 명 순 위 원

이 상 복 위 원

이 준 서 위 원

박 재 환 위 원

4. 회의경과

가. 개회

위원장이 성원이 되었음을 확인 후, 2021년도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 개회를 선언함.

1) 회의록 보고

- 2021년도 제4차 증권선물위원회 임시회의 회의록 및 제12차, 제13차 증권선물위원회 정례회의 회의록을 서면보고한 후 원안대로 접수함

2) 안건 심의

- 의결안건 제152호 『○○○○○○○○(주) 前대표이사 ○○○의 이의신청에 대한 결정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 (진술인) 우선, 저희 회사의 기업회계기준 운영에 대해 말씀 올리겠습니다. ○○○○○○○(주)이 운영하였던 착·중도금 지급기준 진행률 인식을 포함한 모든 회계기준은 설립시에 ○○회계법인, ○○회계법인, ○○회계법인이 공동으로 협의·정리한 항공산업 관련 최적의 회계기준을 설립

때부터 운영하여 왔으며, 2017년 7월 제가 퇴임 때까지 약 19년간 한 번도 변경되어 적용된 사실이 없으며, 4번에 걸친 전임 사장들도 동일한 회계기준을 적용·운영하여 왔음. 2010년부터 2013년 5월까지 약 3년 5개월간 업무 배제 및 퇴사 후 2013년 5월 대표이사로 재취임 때에도 동일한 회계기준으로 운영되고 있었으며, 착·중도금 지급 기준 매출 인식에 대해서는 해외 감사법인 및 임직원들로부터 별도보고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이 일관되게 적용되어 왔었음. 제가 대표이사 취임 후 한 번도 회계기준에 대한 보고를 받은 적이 없었으며, 회계기준 변경도 없었음. 더구나 기업회계기준 적용 판단은 경영관리본부장의 전결로서 대표이사에게 보고되지도 않음. 회계기준에 대한 방향성을 언급하고 지시할 수 있는 지식과 경험도 전혀 없었음. 기업회계기준은 물론 개별안건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서도 회계감사법인 및 임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은 적이 한 번도 없었음. 단지, 감사보고서상 대표이사에게 요구되는 서명은 개별 항목별 확인 없이 관련 임직원들의 업무처리에 대한 신뢰와 회계법인의 확인 및 이사회 승인을 바탕으로 작성하였음. 직원들 문답서상 어떠한 내용들이 언급되었는지는 모르지만 1심 재판 시 많은 관련 증인들의 법정 증언 과정에서 한 번도 회계처리 안건에 대한 결재나 보고한 사실이 없었다고 증언한 바 있음.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전혀 없으며 개별 안건에 대한 회계처리에 대해 회계법인과 임직원들의 결재·보고 받은 사실이 전혀 없는 저에게 명확한 증거자료도 없이 회계분식에 대한 고의성과 중과실을 이유로 과징금을 부과함은 너무나 충격적이며 제 모든 인생이 일시

에 함몰되는 아픔을 겪고 있음. 부디 재고하시어 선처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림. 다음은 회계기준 적용과 관련된 ○○○의 업무특성에 대해 잠깐 말씀 올리겠음. 방위사업은 방위사업청과의 계약서 작성 시 이미 개발이나 생산일정, 그 일정에 따른 착·중도금 지급 계획, 예산 확보, 협력업체 선정, 납품일정, 대금지급 일정과 납품지연 시 지연배상금 등을 일정표상 매우 상세하게 명시하고 있음. ○○○는 방사청과의 계약서상 명시된 일정대로 자체 개발이나 협력업체 선정, 착·중도금 지급을 진행해야 하며 업체의 일정 변경 등의 사유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방사청과 협의를 거쳐 설명 후 진행해야 함. 계약서 작성 후에는 사업진행 일정 및 착·중도금 집행은 계약서대로 진행해야 하며 예산부족으로 착·중도금 지급이 어려울 때에는 자체 자금으로 착·중도금 지급 후 방위사업청에 사후정산 신청할 수 있도록 방위사업에 관한 착·중도금 지급규칙 제3조에 명시되어 있음. 따라서 계약서 작성 시 이미 진행률 및 원가투입 즉, 매출은 거의 확정되어 있으며 방위사업청의 사전승인 시에만 일부 변경이 가능하며 사업지연과 관련한 부분은 국부의 전략과 일정과 연계되어 ○○○의 재량권이 전혀 없음. 예산부족에 따른 방위사업청의 착·중도금 미지급 시에도 개발일정은 납품지체에 따른 지체상금 발생을 막기 위하여 자체 자금을 집행할 수밖에 없었음. 결론적으로 ○○○는 개발일정, 생산일정, 착·중도금 지급일정 및 기타 계약서에 명시된 일정을 임의로 조정할 수 없으며 계약서상 개발·생산 일정이 곧 진행률인 방위사업의 특성상 매출도 임의로 결정할 수가 없음. 끝으로 저는 ○○○ 설립에 참여하여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솔선수범하여 활동하였고 대표이사 취임 후에는 해외 수출 확대 및 경영수주 사업 확대를 위해 매진하여 매년 항공기 수출에 성공함으로써 괄목할만한 성과 창출을 이루어 왔고 국위선양(國威宣揚)은 물론 고용창출을 통하여 국가 및 지역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큰 보람도 느꼈음. 기업회계기준에 대한 지식 및 경험 부족으로 회사 설립 시부터 일관되게 별 의심 없이 시행되었던 착·중도금지급기준을 진행률 기준에 대한 가장 근접한 대응치로 활용하였으며 개별 사안에 대해서는 폭넓게 확인하고 정리하지 못한 저의 경험 부족과 업무처리의 무능함을 탓하여 주시기를 바랍. 이번에 혹독한 경험을 바탕으로 ○○○가 투명하고 경쟁력 있는 회사로 새롭게 태어나는 계기가 되어 대한민국 항공우주산업을 견인해 가는 초일류 회사로 성장할 수 있도록 배려해 주시옵고, 아울러 저 개인에게도 새로운 출발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곡히 양청 드림.

- (위원) 지금 진술하신 것은 지난 증선위에서 본안(本案) 논의할 때 진술하셨어야 되고, 오늘은 이의신청을 왜 하는 것인지, 그 사유에 대해 말씀을 하셔야 되는데 그 말씀은 안하신 것 같음. 제가 이의신청 사유에 대해 두 가지만 여쭙어 보겠음. 첫째는 대표이사의 고의/중과실을 판단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과징금 부과 시효를 잘못 판단했다는 주장이신 것 같음. 이 부분에 대해 금감원 국장님께서 설명을 좀 해 주시는 것이 납득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으니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대표이사의 고의/중과실 부분은, 1심 형사판결을 감안한 증선위 조치결과는 5개 사항에 대해 경영진에 보고가 되었다고 보아 '고의'로 판단하고, 나머지 8개에 대해서는 '중과실'로 판단을 했음. 그리고 그 5개 중에는 前대표이사님께서도 3건 정도 등은 알고 있다고 말씀하셨던 부분임. 그러다 보니까 저희는 대표님이 고의/중과실을 어떻게 판단했는지 모르겠다고 주장하시는 부분에 대해 납득하기 어려움. 또 과징금 부과시효 건은 저희가 조치사전통보서를 보낼 때 증권신고서 3건이 다 대상기간에 포함되어 있었음. 그러다 보니까 최종 부과안에 그 3건을 동시에 기재했는데 사실은 2014년 8월11일 증권신고서 제출분은 과징금 최종 부과할 때 제척기간이 도과되어 제외를 했고, 마지막 2개에 대해서 1,200만 원씩 2,400만 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최종 부과는 2건임.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법상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고 있음.

▶ (진술인) 조금 전에 고의의 기본적인 이유가 직원들로부터 보고를 받았다는 것이 금감원에서 말씀하시는 내용 같은데, 보고 받은 것이 1건도 없었음. 그래서 제가 너무나 억울해서 직원들과 대면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렸음. 방금 금감원에서 말씀하신 그것은 그때도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지만 두 가지임. 하나는 ○○○ 사업이 굉장히 적자가 많이 나기 때문에 이것을 원가절감해서 사업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하겠다는 보고를 받았다는 것과 또 하나는 엔진 성능이 잘 나오지 않아서 엔진을 보완해 가는 방법을 찾아 봐야 되지 않느냐는 보고를 받았음. 제가 보고 받은 것은 회계 관련된 보고가 아닌 경영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보고

를 받았다는 것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나머지 회계와 관련해서는 어떤 누구로부터도 보고 받은 적이 없음.

- ▶ (진술인) 지금 과징금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대표이사의 고의/중과실과 관련해서 이의신청인 쪽에서 이의를 제기한 사유 중에 하나가 임시증권선물위원회 의사록을 보면 회사에 대한 판단만 있고 대표이사의 고의/중과실에 관한 판단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언급이 전혀 없다는 사유를 근거로 이 부분이 누락된 것이 아닌가 하는 의견을 드렸음. 이 사건에서 중요한 사항에 관해서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가 있었다는 판단의 기준이 되는 것은 여러 가지 다른 사실적인 요인도 있을 수 있겠지만 회계기준에 위반되는지 아닌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여짐. 대표이사로서는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됨에도 불구하고 그와 같이 회계처리를 하고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그에 기초해서 증권신고서를 작성·제출했다면 그 부분 관련해서 고의가 있다고 할 수 있겠음. 부과처분의 근거가 되는 가장 중요한 선급금을 중심으로 이 부분에 관해서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는지의 여부는 ○○○가 설립되는 1999년에 ○○회계법인이라든가, 그 이후 감사인이 변경되었던 2000년초의 ○○회계법인도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제기되었지만 회계 직원의 설명에 따라서 모두 다 '적정' 의견을 주었고, 이 사건이 검찰수사가 되고 공소가 제기되어 3년 동안 법정에서 재판을 진행하는 동안 여러 전문가들이 의견을 주고 증언도 하는 과정에서도 이렇게 착·중도금을 원가로 인정해서 누적발생원가를 진행률에 기초해서 매출로 인식하는 것이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는 처분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전문

가조차도 의견의 대립이 있었고, 지금도 그러한 자료가 남아 있음. 대표이사는 회계처리전문가도 아니고 재무에 관한 업무를 담당했던 이력만 있을 뿐임. 그러한 대표이사가 이 부분에 관해서 이와 같은 회계처리에 기초해서 회계서류가 작성되고 재무제표가 작성되고 신고서가 작성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고의가 있다고 과연 평가할 수 있는 것인지, 그 외에 ○○○사업 관련되는 부분이라든가, 엔진교체 수리비용을 어떻게 회계처리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은 적이 없음. 다만, 그 부분과 관련해서 원가를 어떻게 절감하고 어떤 식으로 비용을 절감하고 ○○○의 손실을 최대한 줄여야 된다는 대표이사로서의 일반적인 경영지시를 한 것에 불과한 것인데 그 부분에 관련된 회계처리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는지 아닌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고의가 있다든가, 현저하게 제대로 조사를 하지 않아서 과실이 있다고 과연 평가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은 큰 의문이라고 할 수 있고 이 부분에 관해서는 그 사이에 있었던 1심 형사판결에서도 고의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렵고 더더구나 과실은 판단대상도 아니었음. 그러한 점을 보더라도 저희가 이의신청으로 주장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충분한 타당성이 있다는 것이 이의신청인과 대리인의 의견임. 두 번째,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금감원에서도 말씀해 주신 시효 부분 관련해서는 설명해 주신 부분이 사실이라면 저희가 이의로 제기하는 그 사유는 어느 정도 해소된 것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하고 있음.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선급금, 착·중도금 매출 인식 부분과 관련해서 증선위에서도 기준에 논의되었던 입고기준이 아니고 진행률에 기초해서

인식할 수 있다는 부분에 대해 그렇게 의결하였음. 그런데 이 진행률로 하는 경우 이미 공사가 수행된 부분을 기초로 해서 원가로 인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것이 착·중도 급이기 때문에 일부 빠지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수행한 공사부분이 있을 수 있는데 모든 부분이 원가에 반영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기초로 해서 이 부분이 허위기재다, 거짓기재라고 판단하는 것은 잘못이 있지 않은가, 이러한 쟁점은 형사재판에서도 쟁점이 되었던 부분임. 그러한 몇 가지 이의사유로서 시효문제가 만약 해결되고, 근거가 해결된다고 하더라도 가장 중요한 고의/중과실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의사유가 있다는 것이 저희의 의견임.

- (위원) 진술서를 보면 저희들이 ○○○ 회계처리 기준 관련해서 21건에 대한 문제제기를 했고 그중 3건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음.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3건 중에 2건만 또 인정을 하시는데 그 두 건도 회계처리기준에 대한 것이 아니라 경영지시에 대한 것이라는 말씀을 하셨음. 맞는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런데 진술서에 보시면 가장 중요한 '선급금 관련 매출원가 인식(지적사항 (1)-[1])'에 대해서도 인정을 하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닌지?

▶ (진술인) 저희가 인정하고 있다고 말씀드리는 사항은 회사

내에서 그 부분이 보고가 됐고 논의가 됐고 지시를 했다는 부분임. 선급금 부분이라든가 엔진 리트로핏(retrofit), 그다음에 ○○○사업 관련해서도 경영보고를 받았고 그러한 사안들이 일어났다는 것에 대해서 인정을 한다는 것이고 거기와 관련된 회계처리가 기준에 위반된다든가, 문제점이 있다든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인식을 하고 있었거나 보고를 받았다는 것을 인정한다는 취지는 아님.

○ (위원) 그러면 회계처리기준에 대해서 잘못 회계처리를 해줬다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안 하시는 것이지?

▶ (진술인) 그러함. 저희가 형사재판에서도 이 부분 회계처리가 회계처리기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여지가 있다는 것을 판결에서도 받았음.

○ (위원) 회계처리기준 위반인지 어떤지는 모르겠지만 인정하신 경영지시 부분에 대해서 저희 증선위에서는 지난 3월에 '중과실'로 최종 결정을 한 바가 있음. 제가 금감원에 여쭙겠음. 회계처리기준 위반의 경우, 예를 들어 '중과실'이나 '고의'일 경우 경영진에 대해서도 동일한 제재를 가하는지?

- (보고자) '중과실'이면 개인에 대해서는 해임권고나 이런 것이 있는데, 증권신고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도 있음. 그리고 '고의'가 개인한테 귀속될 때는 검찰고발이나 통보가 될 수 있음. 그것은 개인별로 판단해야 될 것 같음.

- (위원) 지금 금감원에서 파악하고 있는 (1)-3-①과 (1)-5-①에 대해서 저희들이 '중과실'을 의결을 했음. 그러면 본 건 회계 처리기준에 대해서 지금 진술인들이 주장하고 있는 “경영지시일 뿐이었고 회계처리 기준에 관여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해서 금감원은 어떻게 판단하고 있으신 것인지?
 - (보고자) 저희가 볼 때 다툼이 있을 경우 행정부의 권한이 있는 기관이 증권선물위원회라고 생각하고, 그렇기 때문에 증선위에서 판단할 사안이라고 생각함. 그런데 지금 진술인이 주장하는 사안에 대해서 추가로 판단할 증거는 제출되지 않은 것으로 저희들은 판단하였음.
- (위원장) 진술인께서는 추가적으로 꼭 주장하고 싶은 부분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람.
 - ▶ (진술인) 이 회계분식에 대해 제가 ○○○에 근무하면서 가장 당혹스럽고 처음 맞이하는 놀라움이라고 생각함. 제가 거의 17~18년을 근무하면서 회계에 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깨끗하다고 생각하고 제가 볼 때는 저희 임직원들 모두가 기업회계기준을 잘 지키고 있다고 생각했음. 그렇기 때문에 제가 단순하게 이의신청서를 쓰면서 느낀 것은 금융감독원에서 직원들과의 일문일답서에 너무 의지를 해서 진실과는 괴리가 있는 의견이 오고가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음.
- (위원) 오늘은 이의신청건 때문에 오신 것임. 그리고 문답서만을 기초해서 증선위가 판단한 것처럼 말씀을 하시는데 저

회가 법원의 1심 판결문도 분석을 했고, 금감원에서 제출한 것 외에 회사 측에 유리한 자료들도 저희가 다 받아 봤음. 그래서 나름대로 고민도 하고 심사숙고해서 판단을 내렸음. 증권선물위원회는 외부감사법에 따라 공적인 신뢰를 갖춘 국가기관으로서 많은 증거자료, 다양한 의견, 논문 등등을 참고해서 공적인 판단을 하는 기관임. 저희가 지난번에 논의할 때 그렇게 판단을 했었고, 이의신청건도 똑같이 판단할 것임.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지난번에 회의할 때 심사숙고했으며, 실제 판단은 끝났음. 제가 첨언을 하면 회사의 대표이사와 회계담당임원(회계담당임원이 없는 경우에는 회계업무를 집행하는 직원)은 재무제표를 작성 할 책임이 있으며, 그 책임이 굉장히 넓게 인정되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 없음.
- (위원) 결국 부과 시효에 대한 이야기는 변호인이 인정을 했음.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없음. 그렇다면 부과된 근거가 중과실이나, 과실이나 하는 것인데, 회계처리 기준의 위반은 CEO 제재와 연결이 되는 것이고, 그에 대한 반대증거를 제시하지 않는 이상 CEO 제재에 대해서 이의가 있을 수 없다고 생각함. 그렇기 때문에 저는 본안에 동의를 하는 바임.
- (위원) 지금 이것은 당연히 기업회계처리기준의 위반임. 그것과 관련해서 저희가 논란이 있었던 것 같지는 않고, 당시에 이런 문구(wording)를 쓴 것이 있음. 다른 고의 분석

전례와 비교해서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일관되게 성과금 지급 등을 위하여 고의적으로 분식하였다는 동기의 개연성은 약해 보이는 것이 사실인데 대금을 지급하면서 진행률을 인식하는 방법이 문제점이 있다는 인식을 하고서도, 자체 자금이든 차·중도금이든 관계없이 대금지급기준을 지속적으로 만연하게 동 방법을 적용한 것은 고의의 개연성이 있다고 판정을 한 것임. 그것은 그때나 지금이나 동일함. 이 이의신청을 저희가 받아들일 이유는 없는 것 같음.

○ (참여자) 위원님들 말씀이 타당하기 때문에 저는 별 의견이 없으며, 특히나 CEO로서 중과실조차도 없다고 주장하는 것은 납득이 되지 않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만장일치로 원안의결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53호 『(주)○○○○○○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 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첫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회사는 지난 2019년초 2018년 재무제표에 대한 외부감사를 받는 과정에서 과거 회계처리의 문제점을 지적 받았으며, 이에 즉시 2016년과 2017년 감사보고서와

사업보고서를 모두 자진하여 시정하였음. 더불어 회사는 그 해에 외부감사인에게 내부회계관리에서 '비적정' 의견을 받았고 2019년 3월부터 투자주의 환기종목으로 지정되었음. 이후 회사의 모든 임직원이 한마음 한뜻으로 최선을 다해 새롭게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구축하고 내부통제시스템을 고도화하였음. 회계전문인력 영입을 시작으로 하여 회계시스템과 매출관리시스템 고도화, 자금관리시스템 도입, 전표 승인 및 관련 증빙 전산화와 그룹웨어 신규 도입에 이르기까지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회사의 모든 역량을 내부회계관리제도 개선에 집중하였음. 이러한 회사의 절실한 노력이 결실을 맺어 2020년 3월 외부감사인으로부터 내부회계관리제도 '적정' 의견을 받았고 드디어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완전 해제되었음. 회사의 긍정적인 변화는 실적 성장으로도 이어져 올해 회사는 사상 최대 매출과 영업이익의 달성이 유력시 됨. 상장 직전이었던 2015년 매출 480억 원 규모의 회사가 올해 사상 처음으로 매출 1,000억 원을 달성하고 매년 꾸준히 기록해 온 10% 수준의 영업이익률을 뛰어넘어 상장 이후 최고인 150억 원 이상의 영업이익도 달성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음. 올해 상반기에만 지난해 연간 기준인 약 70억 원의 영업이익을 뛰어넘는 실적을 달성할 만큼 코로나19의 영향에도 불구하고 회사는 뛰어난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음. 또한, 올해 4월에는 한국거래소의 기업정기심사를 통해 만 2년 만에 코스닥시장 분류 기준상 최상위에 해당하는 우량기업부에 복귀할 정도로 그동안 회사에 많은 점이 개선되고 발전되었음. 주식시장도 이에 화답하여 투자주의 환기종목에서 벗어난 2020년 3월 이후 회사 주

가도 약 60% 이상 증가하였음. 특히, 소액 개인투자자들이 회사의 변화와 미래성장성에 신뢰를 보이며 회사의 최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을 제외할 경우 주주의 90% 이상이 소액 개인투자자들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회사는 인지하고 있음. 금일 증선위 조치결과에 따라 회사가 충분히 개선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회사의 과오로 인해 현 시점에서 다시 그 피해가 무고한 개인주주들에게 돌아갈 수 있기에 상장기업으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고 있음. 오늘 당사가 출석하여 진술하는 취지는 저희의 과오를 부정하고자 함은 절대 아님. 다만, 당사의 주식 매매거래 정지를 수반하게 되는 검찰통보 조치만은 재고해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음. 안정적인 매출성장과 지속적인 이익창출 능력을 충분히 갖추고 있는 점, 지난해 초까지 내부회계제도를 고도화 하여 경영투명성을 더욱더 확고히 한 점, 2012년부터 현재까지 국내 초·중등 영어교육 1위 상장사인 모회사 (주)○○○○이 변함없는 최대주주로서 회사의 지배구조가 매우 안정적인 점 등을 두루 살피시어 위원님들께서 검찰통보 조치 대신 검찰수사의뢰 조치를 내려주실 것을 진심으로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회사를 대표하여 다시는 이와 같은 문제가 발생되지 않을 것을 꼭 약속드리며, 상장기업으로서의 사회적 책무, 교육기업으로서의 사회공헌,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필요한 모든 노력을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나가겠습니다.

- ▶ (진술인) 회사의 모두진술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회사 임직원의 회계처리기준 위반이 인정된 상황에서 그에 상응하는 조치를 받는 것은 너무도 당연하지만, 금감원의

조치예정사항 중 검찰통보가 확정될 경우 한국거래소 규정상 주식거래정지 대상이 됨으로써 회사뿐 아니라 투자자들의 크나큰 손해가 예상됨. 회사는 기재출한 의견진술을 통해서 이점에 대한 의견을 전달 드렸으며 간단히 요점만 설명 드리도록 하겠음. 舊외감규정 제56조는 회계처리기준 위반 행위자에 대한 검찰고발 또는 통보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는데 행위자를 감독하는 회사에 대한 검찰통보의 근거가 되는 외감법 제21조 양벌규정은 포함하고 있지 않음. 개정된 외감규정 제26조에도 이 부분이 반영되어 있지는 않음. 다만, 본 대리인은 이 부분을 강조해서 회사의 검찰통보가 위법이라는 취지의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님. 회사 관계자가 고의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했다고 해서 회사까지 자동적으로 검찰고발 또는 통보조치를 할 것이 아니라 비례의 원칙상 위반사항의 치유 정도를 감안해서 회사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는 것이 투자자 보호 관점에서 과도한 측면은 없는지 한 번 더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것임. 舊외감규정 제56조제2항에도 검찰고발 또는 통보뿐만 아니라 검찰수사의뢰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본건의 경우 다른 조치로 제재효과를 달성할 수 있는지 고려해 주실 것을 요청 드리는 바임. 회사에 대하여 예정대로 검찰통보를 할 경우에는 회사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를 받게 되며 주식거래도 정지됨. 이와 같이 검찰의 최종 판단을 받기도 전에 주식거래가 정지되는 것은 회사의 위반정도나 위반사항을 치유하기 위한 회사의 노력에 비추어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보임. 저희가 확인한 바로는 대표이사가 회계처리 위반에 연루된 사건의 경우에는 회사가 기소된 사례를 확인할 수 있었음. 하

지만 ○○○○ 사건에서처럼 회계팀장이 단독으로 위반하거나 ○○○○ 사건에서와 같이 CFO와 회계팀장이 대표이사 몰래 회계처리 위반에 가담한 경우에 있어서는 회사가 기소되지 않았고 무혐의 처리되었던 것을 확인하였음. 이처럼 대표이사가 관여하지 않은 외감법 위반 사건의 경우에는 대부분 불기소처분 되는 상황에서 양정기준을 기계적으로 적용하여 검찰통보를 할 경우에는 벌금형보다도 오히려 더 무거운 제재라고 할 수 있는 주권 매매정지를 당하게 됨. 이는 회사의 평판에 있어서 금전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에 해당된다고 할 것임. 본건 의견서 별첨에 자세히 기재한 바와 같이 회사의 CFO가 관여한 것인지의 여부가 불분명하고 회사는 감리착수 전에 외부전문가의 포렌식 조사를 포함한 진상조사를 실시하여서 회계처리 오류를 전부 수정, 재공시하였음. 또한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을 위해 용역을 발주하여 시스템을 전부 정비한 바 있음. 회사가 모두진술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는 한국의 미래를 이끌어갈 영재교육을 담당하는 교육회사로서 회사 평판이 어느 회사보다 중요함. 회계처리 위반에 연루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검찰수사가 필요하다는 점을 절대 부인하는 것이 아님. 회사 그리고 투자자의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식인 수사의뢰 통보를 하는 것만으로도 그 목적을 충분히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조치를 신중하게 살펴봐 주시기를 당부 드림.

- (위원) ○○○ 전무가 ‘(주)○○○○에서 파견된 CFO’라고 되어 있음. 그러면 소속은 (주)○○○○인 것인지?

- ▶ (진술인) 아님. (주)○○○○에서 퇴사를 하고 (주)○○○○○○○○로 입사를 했음.
- (위원) (주)○○○○에서 퇴사를 하고 (주)○○○○○○○○에 새롭게 입사를 해서 CFO의 역할을 한 것인지?
 - ▶ (진술인) 맞음. (주)○○○○에서 주로 했던 업무가 재무회계 쪽은 아니고 주로 IR과 M&A를 담당했었음. 그래서 본인이 (주)○○○○○○○○와의 M&A를 주관했었고 성공적으로 인수하면서 사실상 처음으로 CFO로서의 직무를 수행한 것임.
 - (위원) 그러면 ○○○ CFO 아래 회계팀장이 ○○○ 이사인지?
 - ▶ (진술인) 맞음.
 - (위원) ○○○ 이사는 언제부터 언제까지 근무했는지?
 - ▶ (진술인) ○○○ 이사는 2000년 중반부터 일을 했고 퇴사한 시점은 2019년 4월경임.
 - (위원) 아까 대리인께서도 말씀을 하셨는데 회사에서 CFO의 관여 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얘기했음. 그렇다면 회사에서는 몰랐다는 것 아닌지?
 - ▶ (진술인) 몰랐던 것으로 인지하고 있음.

○ (위원) 증선위 안건들을 보면 대개 CFO가 CEO에게 보고를 하는데, 이 건에서는 '관여사실이 불분명하다'고 얘기를 하셔서 의아스럽다는 생각이 듭. 어쨌든 문제된 기간이 2016년, 2017년, 2018년 3/4분기로 거의 3년인데, 아무리 CFO가 재무, 인사, 자금 등 전반적으로 관리했다고 하더라도 어떻게 CEO가 전혀 몰랐을까하는 의문이 있음. 오늘 대표이사께서 꼭 오셨어야 했음. 나중에 기회가 되면 별도로 확인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봄. 그리고 이 자료를 봤더니 회사 측에서는 위반사항 발견 즉시 자체 진상조사를 했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발견된 것인지?

▶ (진술인) 당시 (주)○○○○○○○ 2018년 재무제표가 지정감사였음. 지정감사를 받게 된 사유는 별도로 연결재무제표를 하루 늦게 제출하게 되어 지정을 받게 되었고 ○○회계법인인 지정감사를 수행하는 와중에 선수금에 문제가 있다고 인지를 하였고 저희가 그 사항을 모회사로부터 전달 받은 상황에서 저희가 바로 포렌식을 해야 된다고 했음.

○ (위원) 포렌식은 누가 의뢰를 했는지?

▶ (진술인) 감사인이 이슈 제기를 했고 ○○○ 전무가 바로 보고를 해서 저희 경영진 회의에서 포렌식을 하자고 결정 내렸음.

○ (위원) ○○○ 전무가 분식회계를 왜 했다고 생각하시는지?

▶ (진술인) 제가 볼 때 당시 ○○○ 전무가 분식을 할 이유

가 없다고 생각하고 있음.

○ (위원) ○○○ 이사는 어떤지?

▶ (진술인) ○○○ 이사는 당시에 예산을 같이 병행하고 있었음. 그러다 보니까 예산과 회계의 실적 차이(gap)가 많이 생기다 보면 실적의 압박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함.

○ (위원) 'CFO는 포렌식 보고서 등을 통해 관여한 사실이 확인되나,' 라고 되어 있는데 포렌식 보고서를 증선위에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음. 그리고 또 회사 측에서 자체 진상조사를 했다고 말씀하셨음.

▶ (진술인) 저희가 ○○○을 통해서 진상조사를 한 것임.

○ (위원) ○○○을 통해서 했다면 그 기록이 있을 것인데 그것도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음. 그것을 검토해 보면 저희가 이해하는 것에 있어서 도움이 될 것 같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검찰통보는 심각한 것 아니냐, 소액주주도 많고,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소액주주가 피해를 받는다는 것 외에 주장하실 다른 사유는 없는지?

▶ (진술인) 저희가 소비자산업이다 보니까 설명이 필요한 부분들이 아무래도 있고 그리고 또 평판으로 유지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잘 부탁드립니다.

○ (위원) 진술인의 주장은 회계처리기준 위반은 인정을 하지만

검찰통보를 통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의 대상이 되는 것은 피할 수 있게 해 달라는 것이 주장의 요지이신 것 같고, 대리인께서는 결과론적으로 검찰통보를 재고해 달라는 말씀을 하시려면 검찰통보가 제외될만한 충분한 내용을 설명해 주셔야 되는데 그 내용이 조금 옹색하신 것 같음. ○○○ 건도 말씀드린 것처럼 동일사건에 대한 중복제재와 관련된 것이고, 그래서 사유가 조금 옹색하다는 생각을 함. 그런데 진술 요지를 보면 책임자의 수위를 조금 더 낮추려고 하는 것인데 그렇다면 前CFO의 관여 사실에 대해서는 현재 회사에서는 인정을 안 하고 있으신 것인지? 그냥 회계팀장의 일탈이라고 보시는 것인지?

▶ (진술인) 회사는 회계팀장의 일탈이라고 보고 있음.

○ (위원) 그런데 포렌식 결과 前CFO가 관여한 사실이 굉장히 명확하게 드러났음.

▶ (진술인) 저희 사무실에서 포렌식을 진행했었음. 그리고 그 당시에 ○○○ CFO와 ○○○ 회계팀장에 대해서도 저희가 인터뷰를 몇 차례 진행했었는데 ○○○ 팀장을 저희가 몇 차례 인터뷰를 진행하면서 느낀 바는 이분이 굉장히 우유부단한 분이었고 그리고 상급자에 대한 눈치를 굉장히 많이 보는 분이었음. 그래서 ○○○ 회계팀장에 대해서 저희가 몇 차례 인터뷰를 받았는데 약간씩 말이 변동되는 그런 것도 있었음. 그리고 CFO로부터 어떤 지시를 받았는지에 대해 명확하게 저희에게 말씀을 못하셨음. 그리고 CFO의 경우에는 저희와 인터뷰를 할 때 자기

는 명시적으로 회계팀장한테 회계분식을 지시한 바가 전혀 없다, 하지만 재무 전반을 책임지고 있는 CFO 입장에서 회사의 숫자라든지 전반적으로 좋게 보이는 것은 당연히 좋을 수밖에 없으니까, 그런 상식적인 차원에서 얘기를 했었다고 진술을 했었음. 그리고 그것을 받아들였던 ○○○ 회계팀장의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본인한테는 압박으로 느껴졌다는 식의 진술이었음. 그래서 저희가 포렌식 보고서를 최종적으로 작성할 때는 ○○○ CFO가 이 부분에 있어서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표현을 쓰지는 않았음.

- (위원) 그런데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회계팀장이 회계처리를 위반할만한 아무런 동기가 없음.
- ▶ (진술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회계팀장이 당시에 사업계획도 짜고 본인이 회계처리를 하다 보니까 이해상충이 분명히 발생했을 것으로 보이는데 그것이 주요한 이유라고 생각됨. 그리고 또 다른 이유는 상장하기 이전부터 ○○○ 대표가 동업을 했었는데 이 동업자가 회계팀장을 데리고 오셨음. 그리고 동업자가 나가고 난 뒤에도 이분이 계속 회계팀장 자리를 보존했는데 그러면서 새로운 CFO가 오면서 이분한테 잘 보이고자 하는 욕구는 분명히 있었을 것으로 생각함.
- (위원) 그래서 얘기 나온 것이 결국에는 대표이사가 모회사와 성과보상계약 체결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은 대표이사가 의도를 하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이 드는 것임.

▶ (진술인) 제가 간단히 말씀드리겠음. 일단, 첫 번째 말씀드릴 것은 저희 보고서에는 담지 않았지만 사실 ○○○ 대표이사께서 동업을 하다가 동업자와의 관계가 틀어지면서 (주)○○○○의 지분을 매각하게 되었는데 ○○○ 이사는 동업자 분의 사람이었음. 그래서 ○○○ 전무가 왔을 때 사실 ○○○ 이사를 해고하고 싶어 하셨음. 그런 부분에서 아마 ○○○ 이사는 ○○○ 대표이사에게 잘 보이고 싶었던 부분이 굉장히 컸었던 것이 굉장히 많이 작용했었던 것 같음. 이분은 이전에 저희가 아주 작은 영세한 학원일 때 경리를 하셨던 분임. 그러다가 상장사 회계팀장까지 되신 경우이기 때문에 이 자리를 놓지 않고 싶었던 부분도 있어서 자리보존에 대한 의지가 있으셨던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음. 그다음에 두 번째 대표이사에 대한 (주)○○○○ 주식 5만주에 대한 보상 조건은 무엇이냐 하면 그 당시 (주)○○○○은 채용생이 감소하고 있었고 (주)○○○○○○은 거의 20%씩 성장하고 있었던 회사였음. 그렇기 때문에 교차마케팅을 통해서 (주)○○○○ 채용생을 늘리고 싶었던 사업적인 욕심이 강했었는데 그 당시 5% 이상 성장하면 (주)○○○○ 주식을 ○○○ 대표이사에게 부여하는 조건이었는데 이 조건은 당시로 보면 ○○○ 대표이사는 특별히 무엇을 하지 않아도 받을 수 있는 조건이었음.

○ (위원) ○○○ 대표이사가 모회사와 성과보상계약을 체결했지만 본 회계처리와는 전혀 관련이 없다는 얘기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금감원 자료에 보면 대표이사의 성과보상이 CFO가 회계분식을 하는 동기로 서술되고 있음. 왜 그것이 동기로 작동할 수 있을까?

- (보고자) 성과보상계약 체결은 ○○○ CFO가 (주)○○○○ 측과 진행하면서 추진한 사항임. 3년 동안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5% 이상 달성되면 모회사 주식 5만주에 상당하는 차액을 주게 되어 있음. 그 부분은 ○○○ CFO가 내려오면서 본인이 체결한 계약이고 또 ○○○ 대표가 기존 지분을 다 넘기고 사실은 CFO 자리지만 경영 일체는 ○○○ 전무가 추진한 것으로 보고 있음. 그렇기 때문에 ○○○ 전무도 본인의 입지를 굳건히 하고 ○○○ CEO를 존중하는 그런 부분이 감안된 것으로 보고 있음.

○ (위원) 이것에 대해서 진술인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진술인)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지 않음. 당시 ○○○ 전무가 가게 된 배경에 대해서도 (주)○○○○이 파견했다는 측면보다는 ○○○ 대표께서 ○○○ 전무를 요청(invite)한 측면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음. 그렇기 때문에 ○○○ 전무가 ○○○ 대표와 동등한 위치, 통제하려는 위치의 목적이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고 저희는 판단하고 있음.

○ (위원) 성과보상계약이 비밀(confidence) 유지가 되는 것인지? ○○○ 이사도 이 내용을 알고 있었는지?

▶ (진술인) ○○○ 이사는 몰랐던 것으로 저는 알고 있음.

- (보고자) 2016년과 2017년에 대해서는 분식회계로 5% 실적을 달성해서 주식을 취득하게 됐는데 2018년도 지정감사의 감사를 받을 때 ○○○ 전무가 ○○○ 팀장한테 “2018년도 실적 달성을 해서 우리가 ○○○ 대표에게 경영보상을 시켜 주자.”는 얘기를 전달해서 분식을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분식은 2016년, 2017년에 일어났음.

- (보고자) 그런데 2018년에 얘기를 했음.

○ (위원) 분식이 2016년에 선수금을 바로 매출로 인식한 것이 한 25억 원 됨. 이것은 금감원과 (주)○○○○○○에 공히 질문 드리는데 혹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잘못된 내용이 있으면 시정해 주시기 바람. 2017년 지적금액은 선수금 부분이 그대로 넘어오는 것이 있고, 한 30몇 억 원의 가공매출이 있고, 그래서 둘이 합해서 60억 원 정도 되는 것인지?

▶ (진술인) 말씀하신 내용 중에서 2016년에 대한 부분은 말씀하신 부분이 맞음. 다만, 2016년에 선수금 차이가 된 부분이 2017년 말까지 누적적으로 해소가 안 되면서 이어졌기 때문에 그 금액에 더해서 2017년에 추가로 수강료 수입에 차이가 더 있었던 부분도 맞음. 다만, 말씀하셨던 매출을 가공으로 만들었다는 부분은 2017년에 10억 원 정도임.

- (보고자) 2016년에는 선수금 조기 인식하는 것이 25억 원 정

도 됨. 2017년에는 허위전표로 매출을 허위계상한 금액이 10억 원임. 나머지 51억 원은 선수금을 더 조기 인식해서 2016년과 2017년 합한 선수금 조기 인식 금액이 51억 원임.

- (위원) 어쨌든 두 분의 진술이 상충됨. 진술내용을 읽어보면 아까 배경에 대해서 동기 부분이 조금 모호하기는 하지만 ○○○씨는 아까 말씀드렸던 25억 원, 2017년도 넘어와서 60억 원, 이 총체적인 금액을 아마 ○○○ CFO가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추정의 얘기를 하고 있음. 직접적인 지시를 받은 적은 없으나 전체 내용은 알고 있었을 것이라고 얘기함.
- (보고자) 지시를 받고 재무제표를 수정해서 보고했다고 진술하고 있음.
- (보고자) '○○○ 전무는 연간 영업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1차, 2차, 3차 형식으로 본인의 목표수준에 만족할 때까지 실적을 조정해보자고 요청했습니다.'라는 내용이 있고, '이러한 조정이 2년 이상 지속되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라는 내용도 있음.
- (위원) 지금 이런 진술에 대해서 (주)○○○○○○○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또 이런 진술도 있음. 아까 25억 원을 다 포괄하는 내용인데 '조정전 이익과 조정후 보고는 분기별 또는 반기, 연간으로 이루어졌으나, 선수금이라는 성격, 강사 퇴직금의 과소계상의 성격 이외에 전표생성 및 입력 등 회계처리 방법과 수단에 대해서는 보고한 적이 없다고 하는

것이 더 정확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라고 해서 구체적인 내용은 보고가 되지 않았음. 그것은 맞는지?

- (보고자) 제가 그 설명을 드리면 ○○○ 팀장과 ○○○ 전무 의견이 서로 엇갈리는데 저희가 그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포렌식 보고서 내용을 그대로 읽어드리겠음. 먼저 재무팀의 ○○○ 차장에 대한 포렌식 보고서의 질문인데, 조사원이 “○○○ 회계팀장이 ○○○ 전무님으로부터 지시를 받았다고 보시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그렇게 물었음. 답변을 ○○○ 차장이 “○○○ 전무님이 실적에 많이 신경을 썼고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습니다. 가결산 재무제표가 나온 후에 영업이익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고 회계팀장님께 말씀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 전무는 직접적으로 이만큼 영업이익을 분석하라고 지시는 하지 않았지만 계속 그런 뉘앙스를 준 것으로 저희는 보았음. 가결산 재무제표가 나온 후에 영업이익이 좀 더 나왔으면 좋겠다는 얘기는 분석을 하라는 얘기임. 그다음에 인사팀의 ○○○ 팀장도 포렌식 보고서에 있는데 조사원이 “평소 실적달성에 대한 압박 등이 있었는지요? 직접 실적압박을 받지는 않았더라도 누구로부터 들은 적은 있는지요?”하고 묻자 인사팀의 ○○○ 팀장이 “팀장 회의에서 ○○○ 전무님으로부터 분기매출액, 당기순이익, 영업이익을 맞춰야 한다는 언급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렇게 제3자들이 다 ○○○ 전무가 암묵적으로 분석을 지시한 것으로 포렌식 보고서에 나와 있음.
- (보고자) 거기에 추가해서 하나만 더 말씀드리겠음. 포렌식

당시에 ○○○ 회계팀장도 인터뷰를 했는데 “회계조정을 한 후에 ○○○ 전무님께 보고는 어떻게 하셨나요?” 물었더니 “가결산 후에 회계조정을 해서 최종 실적이 어떻게 되었다는 보고를 드렸습니다.” 이렇게 포렌식 조사에서 가결산 자료와 조정을 한 자료를 보고한 사실을 제시하고 있음.

- (위원) 금감원 얘기를 들어보면 CFO가 회계팀장 및 다른 회계구성원한테 상당한 압박을 줬다는 것은 (주)○○○○○○도 동의하시는 것 같음. 왜냐하면 포렌식 보고서에 있는 것이니까 이것을 가지고 거론할 필요는 없음. 자료 16페이지에 보시면 회계팀장이 포렌식을 해보니까 엑셀파일이 나왔음. 그래서 2016년에는 영업수익이 10억 원이 나왔고 2017년, 2018년으로 가서 퇴직금 부분 6억 5,000만 원이 나와서 10억 원과 6억 5,000만 원이 실제로 디지털포렌식을 해보니까 분석금액 규모로 등장된 것임. 그런데 이것을 CFO는 어떻게 언급을 하고 있느냐면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25억 원이나 60억 원 규모가 아니라 10억 원과 6억 5,000만 원 정도로 인식하고 있었다, 맞는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 하면 둘 간의 진술이 상충되는데 결국은 포렌식 보고서가 일종의 사실(Fact)이라고 할 수 있음. 사실(Fact)에는 말로 서술된 실적에 대한 압박이 있고 금액적으로 나온 것은 이 금액 말고 아까 금감원에서 얘기하는 25억 원이나 60억 원 내용은 포렌식에 의해서 나온 것은 아닌 거 같음. 맞는지?

▶ (진술인) 재작성된 금액임.

○ (위원) 그래서 CFO는 그렇게 주장하는 것 같은데 본인은 10억 원, 6억 원 정도의 내용만 2017년도에 인지했다는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회계법인에서 이렇게 이슈를 제기해서 포렌식을 2019년 2월에 하고 결국 재무제표 수정을 하면서 2018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대해 '비적정'을 줬다고 하셨는데 그 '비적정'으로 인해서 회사가 어떠한 불리한 처분을 받은 것이 있는지?

▶ (진술인) 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을 받았는데 1년 뒤에 저희가 바로 '적정'을 받았음.

○ (위원) 회사가 이런 사건을 겪고 내부회계관리제도를 강화하기 위해서 어떤 변화가 있었는지?

▶ (진술인) 2016년 4월에 상장을 했기 때문에 저희가 상장할 때 당시에 상장에 준하는 내부회계시스템을 갖추고는 있었지만 고도화를 많이 했음.

○ (위원) 지금 이 이슈가 CFO가 회계에 대해서 정통하지 않았기 때문에 회계팀장한테 거의 일임하다시피 하고, 상식적으로 수수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알 수 있을 듯한 내용인데 그

것을 놓쳤다는 말임. 그리고 실제로 2017년에도 이것을 제대로 반영해보자 하는 진술의 내용은 나오나 재무제표는 여전히 분식이 되어서 2016년, 2017년, 2018년 3분기까지 가고 있음.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아까 CFO가 이 내용을 몰랐다고 하는데 선수금 25억 원 부분은 2017년도 1/4분기에 선수금을 먼저 당겨 수익으로 잡다보니까 그 금액이 빈다는 말인데 2017년도에는 그 금액 규모를 알았을 것 같음.

- ▶ (진술인) 저희가 일단 월 단위의 선수금이 당시에 한 70억 원 정도 발생함. 그러다보니까 ○○○ 이사가 롤오버(Roll over)로 할 수 있는 금액의 한계에 도달해서 제가 볼 때는 터진 것 같음. 2016년과 2017년 넘어가는 금액의 한계치가, 저희가 3개월 단위로 수강료를 받는데 그 금액이 최대(max)가 되면서 어떻게 해결할 수 없는 금액의 한계점이 와서 다른 것들도 건드리고 했던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음. 지금 현재는 저희가 Back office에서는 매출을 조정할 수가 없어서 완전히 구분이 되어 있음. 다른 부분들도 다 기능적으로(functionally) 구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수기조정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없음.
- ▶ (진술인) 기존 저희 내부회계의 약간 미비한 부분으로 인해 문제가 있었던 것이 있어서 그 부분을 보완하고자 시스템 간에 숫자를 직접적으로 수정할 수 없게 다 막아 놓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회계팀 내에서 결산과정이 필수적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필연적으로 전표를 입력해야 되는 부분이나 수정하는 부분도 있지만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을 다 업무분장으로 구분했음. 저 같은 경우에도 사실상

회계ERP에 대한 조회권한은 있으나 전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변경하거나 작성하는 권한을 다 배제해서 저는 순수하게 조회만 가능하고 전표 승인 자체를 저희 별도의 그룹에서만 승인된 전표를 입력할 수 있게 시스템 자체를 다 바꾸어 났음. 사실상 저희 회계팀원들도 마찬가지이고, 그래서 저희는 큰 틀에서는 직접적으로 사업을 일으키고 있는 각 학원의 지점에서 기본적인 전표를 입력하고 저희는 그 전표가 증빙에 맞게 제대로 작성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면서 승인을 하거나 반려만 하는 식으로 현재 관리하고 있어서 내부회계관리제도는 기존보다는 확실히 문제가 안 생기도록 고도화를 시켜 놓은 상태임.

- (위원) 그 정도는 상장회사로서 진작 했어야 했을 정도의 수준인 것 같음.
- (위원) 상식적으로 포렌식 결과나 금감원이 지적해 주신 것이나 혹은 다른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생각했을 때 저는 지금 ○○○ 본부장님께서 수사기관도 아니면서 일방적으로 회계팀장의 일탈이라고 지목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의아스러움. 제 생각에 前CFO에 대해서는 적어도 중립적인 입장(Neutral stance)을 취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 직접 수사를 한 것도 아닌데 일방적으로 회계팀장을 지목하고 CFO는 동기가 없는 것으로 생각한다고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이 개인의 생각인 것인지 아니면 오늘 출석예정이셨던 ○○○ 대표이사님과 협의를 한 회사의 입장인 것인지?
- ▶ (진술인) 2019년 2월에 저희가 재무제표 재작성을 해야 된

다고 했을 때 그 재무제표 재작성을 제가 직접 주도를 한 당사자이고 ○○○과 함께 포렌식을 수행한 프로젝트의 리더였음. 그렇게 실제로 포렌식도 주도했고, 제가 (주)○○○○의 연결회계 담당자였기 때문에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본 건에 대해 증선위에 답변을 드린 것임. 그리고 ○○○ 전무 입장에서 그 상황에 대해 거짓말을 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함. 회사의 입장은 아니고 일련의 과정들을 보고 판단한 제 의견이라는 말씀을 드리겠음.

○ (위원) 개인적인 생각이라는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제가 듣기에는 객관적으로 신뢰가 가는 증거 (evidence)를 제시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여하튼 작업에 참여하신 담당 본부장으로서의 개인 의견이라고 하시니까 저도 그런 정도로 수용을 하겠음.

▷ 첫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두 번째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저는 2014년 4월부터 5년여간 (주)○○○○○○의 재무를 총괄하였던 ○○○이라고 함. 금융감독원이 지적하신 것처럼 저는 2016년부터 약 3년간 (주)○○○○○○의 회계와 공시오류를 막지 못한 책임이 있고 오류의 일부를 사후에 알고도 이를 즉시 수정하지 못한 과오를 인정하

며, 이는 상장사 임원으로서 매우 부끄럽게 생각함. 그러나 금융감독원의 판단처럼 적시하신 부분을 사전에 고의로 지시한 것은 절대 아니었기에 이를 소명 드리고자 함. 이는 제 자신의 명예뿐만 아니라 제가 11년간 몸담은 상장회사 (주)○○○○○○와 모회사 (주)○○○○의 수많은 소액주주와 임직원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일이오니 제 소명을 귀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전조치서에 적시하신 금액 중 제가 관여된 부분은 사후에 알게 되고도 수정하지 못한 선수금 10억 원과 퇴직급여충당금 6.5억 원 뿐임. 그리고 제 의견서를 보시면, '차이'로 표시된 10억 원, 6억 원 등이 회계팀장이 조정한 금액이며 조정하지 않았다면 실제 손익은 이랬을 것이라는 실손익이라는 숫자와 함께 비교해 주는 자료임. 이 자료 또한 회계팀장이 먼저 저에게 이런 이슈들이 있다고 보고한 것이 아니라 회계팀장의 설명이 아무래도 석연치 않아서 2017년 결산이 마무리되는 2018년 1월말에 조금이라도 이슈(issue)가 있는 것은 다 보고를 해 달라고 해서 제가 사후에 알게 된 것임. 회계팀장이 퇴직금 6.5억 원은 회계사들도 양해한 것이라고 해서 저는 머릿속에 저 선수금 10억 원은 되돌려 놔야 되겠다고 생각하고 2018년 중에는 정상화를 하자고도 이야기를 했음.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2018년 연간감사를 지휘하던 중에 예상 밖의 큰 금액들이 지정감사로 재작성되는 바람에 제 의지로 그 선수금 부분을 복구하지 못했음. 따라서 당시 (주)○○○○○○의 회계적 중요성 금액이 약 7억 원이었으므로 제 고의 부분은 중요성 기준 약 2~3배 금액을, 그것도 사전이 아닌 사후에 알고도 즉시 수정하지 못한 부분을 가지고 제 잘못을 따지는 사전조치가 되

있어야 하지 않나 생각함. 좀 더 구체적으로 회계오류의 세 가지 항목과 제 관여도를 말씀드리겠음. 첫째, 가공전표를 통한 허위매출 10억 원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회계 부정 건이며 이런 일이 발생하였다는 사실 자체가 참으로 참담합니다만 저는 회계팀장이 그렇게 조정하였을 것이라고 상상도 못하였고, 사전 지시는 물론이고 사후 보고도 받은 바가 없었음. 이는 회계팀장의 확인서에 보시면 '2018년 지정감사인이 중요한 왜곡표시를 발견하였다고 통보하기 전까지는, 가공의 매출채권을 인식하는 전표를 생성·입력하는 등 금융감독원에서 지적하는 그 외의 회계 처리 오류에 관하여 CFO로부터 지시받거나 CFO에게 보고한 적이 전혀 없었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음. 두 번째 오류인 선수금은 제가 회계팀장에게 손익조정을 요청한 최초의 시점이 2017년 1월에 2016년 연간이익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없겠는지 그때 요청했는데 선수금을 건드린 것은 2016년 1분기부터 분기 별로 지속되었으므로 제가 발단이 되었다고는 할 수 없을 것임. 그리고 2017년초에는 연초, 연말 경계에 있는 매출시기가 모호한 부분을 전년도 매출에 유리하게 해석했다는 최초의 회계팀장 해명을 크게 문제가 안 되는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음.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회계팀장이 작성한 확인서 1항과 2항을 보시면 '본인이 (주)○○○○○○ 재직 중 처음으로 ○○○ 前CFO로부터 영업이익의 수준과 관련하여 요청을 받은 시기는 2017년 1월말~2월초경입니다.' 그리고 '본인은 2017년 2월 초순~중순경 영업이익이 4~5억 원 가량 상향 조정된 실적을 보고하자, ○○○ CFO는 회계감사인이 감사과정에서 인정한 조정인지에 대해 물었고, 이에 본인은

수강료 결제 내역과 실제 수업 수강 시기 간에 모호한 부분이 있어 매출과 선수금의 구분을 최대한 유리하게 해석하였다며 감사과정에서 문제없을 것이라는 취지로 답하였음.'이라고 하였음. 마지막으로 세 번째 항목인 퇴직급여 총당금은 (주)○○○○○○ 임직원의 80% 이상이 프리랜서 등 사업소득자인 상황에서 문제가 된 2016년~2017년 그 사이에는 퇴직금 지급과 회계적 반영 여부에 대한 논쟁과 소송이 진행되고 있었고 판례가 충분히 쌓인 2018년 이후에서야 노무적·세무적 관점에서 사업소득자라는 것은 중요하지 않고 회계적으로는 보수적으로 총당금을 계리평가로 적립해야 한다는 회계원칙들이 보다 명확하게 정립되었음. 그래서 그때 기준 자체가 다소 유동적이었던 과실인데 지금의 확고한 시각으로 평가하시는 부분은 관련자들에게 억울한 면이 존재하지 않나 생각함. 그래서 저희 회계팀장이 작성한 확인서 사항에도 저에게 "강사는 사업소득자에 해당하므로, 강사 퇴직금은 꼭 적립하지 아니하여도 되고, 당시 감사인도 이를 인정하였다."고 저에게 설명하였으므로 저는 그것을 참고로만 생각하고 있었음. 그리고 제 의견서에 있는 제 경력을 보시면 보시다시피 기업투자, 인수 합병, IPO 등 재무전략 중심이었고 제가 재무경력이 일천했던 상황에서 이 회사에서 처음으로 CFO를 맡다 보니까 저보다 회계적으로 전문가라고 생각했던 회계팀장과 감사법인의 이중적인 필터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믿고 있었음. 그래서 저는 회계 관련한 부당한 압력이나 회유 등을 행사한 적이 없고 두 주체한테 자율성을 보장하고 있었으니까 그쪽에서 잡음이 없으면 그 이중의 필터가 작동해서 회사의 회계가 잘 작동하고 있을 것이라

고 믿고 있었음. 그래서 저는 분기별 실적 점검 정도를 챙기고 나머지 해외사업이라든지, M&A, 건물구입 같은 재무전략 관련된 일에 집중을 했었음. 하지만 회계사건이 발생하고 나서는 제가 수습에 최선을 다 했음. 이사회와 긴밀하게 소통하고 포렌식 보고서를 제출하고 재무제표 재작성을 통해서 (주)○○○○○○와 모회사의 반기/정기 모두 다른 감사인으로부터 ‘적정’ 의견을 받고 이를 공시하였고, 배당금을 상환하고 자사주 소각 등을 통해서 혹시라도 이러한 사건으로 인한 주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노력하였음. 그리고 제가 퇴사하는 시점까지도 내부회계관리제도에 컨설팅을 착수시키고 회계팀의 인적 구성을 조금 더 고급화해서 그런 것까지 다 마무리하고 11년 만에 퇴사하였음. 저는 실적 인센티브가 미미했고 모회사와 현 CEO의 신임 등 제 입지 측면 제가 회계분식을 지시할 이유가 없었음. 회계팀장은 회사의 소유구조가 변화하는 상황에서 조직 내 생존의 이슈(issue)가 있었다고 생각함. 회계팀장은 경영권이 바뀐 상황에서 본인의 상사였던 전임 CFO가 현CEO와의 불화로 모회사로부터 불신임을 받아 쫓겨나듯 퇴직을 하자, 그리고 또 현CEO ○○○ 대표이사도 “저 팀장은 조금 불신임스러우니까 이왕이면 내 보냈으면 좋겠다.”는 얘기까지도 저한테 하셨었음. 그래서 스스로의 입지를 지키기 위해서 회사 손익을 보기 좋게 만들 유인이 존재했었다고 저는 생각함. 마지막 맺는 말씀을 드리겠음. 저는 상장회사 재무임원으로서 제 역할을 못한 책임이 분명히 있으며, 이를 심히 부끄럽게 생각함. 본 사건으로 인해 회계오류를 막지 못한 무능한 CFO라는 낙인이 찍히고 갑자기 재무전문가로서

미래가 불투명해지는 등 수 많은 심리적이고 경제적인 고초를 지금도 겪고 있음. (주)○○○○○○ 또한 본 사건 이후 모회사로부터 경영의 독립성 등에서 많은 무형의 손실이 있었고 회사의 중심 또한 사업 쪽에서 회계 쪽으로 급격히 이동하면서 큰 성장통이 있었음.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고난의 시간은 상장회사 CFO의 자격에 대해 제 자신을 근본적으로 돌아보는 시간이었다고 생각하며 (주)○○○○○○는 회계시스템을 전면 정비한 후에 지속적으로 성장해서 회계오류로 인해 부풀려졌던 2016년, 2017년의 각각 매출 586억 원, 688억 원에 크게 상회하는 2019년, 2020년 각각 매출 821억 원, 843억 원을 기록하는 등 더 탄탄하게 성장하게 되었음. 제 영역인 회계분야에서 이렇게 심각하고 한심한 오류가 발생하였음에도 이렇게 사실관계를 구구절절하게 말씀드린 것은 임직원, 수많은 소액주주들의 경제적·심리적인 피해까지 생각하니 제가 앞으로 고개를 들고 다닐 수 없는 수준인 것 같아서 (주)○○○○○○가 거래정지 및 상장 실질심사만 면할 수 있게 선처하여 주셔서 제가 전임 CFO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다할 수 있게 해 주십사 하는 것임. 이미 발생한 회계부정사건의 책임을 밝히는 과정은 관련자였던 회계팀장과 CFO가 도의적으로 사퇴했고 회사의 중심이 사업 쪽에서 관리영역 쪽으로 이동할 정도까지 힘든 여정을 거쳐서 제대로 회계시스템이 작동하는 (주)○○○○○○와 같은 경우에는 수사의뢰만으로도 그 사실관계 및 관련인의 처벌 수위를 결정할 수 있다고 제가 들어서 알고 있음. 한국의 미래형 인재를 양성한다는 큰 자부심이 있었던 (주)○○○○○○에 4~5년 전에 회계적인 과오가 있었고 불행 중 다

행으로 2년 전부터 그 과오를 바로 잡고 촉망 받는 사업의 영역뿐만 아니라 그 어느 회사보다 더 엄격한 회계관리를 하고 있어서 앞으로의 성장이 더 기대되는 우량 상장사가 제 개인적인 부족함으로 인해 더 큰 시련을 겪지 않고 발전할 수 있도록 제 개인적인 과오보다는 회사의 미래를 살피주시기를 위원님들께 고개 숙여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 (위원) 회계팀은 보통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 (진술인) 회계팀은 퇴사할 때마다 달랐는데 최대 5명까지 있었는데 4명일 때도 있고 그랬음.

○ (위원) 회계팀에서 예산까지 다 짠 것이죠?

▶ (진술인) 맞음.

○ (위원) 보고라인은 어떻게 되어 있었는지?

▶ (진술인) 과장과 팀원들은 회계팀장의 지시를 받아서 일을 하고 회계팀장은 분기별 실적보고와 연말에 경영계획을 세울 때, 그러니까 4번의 분기별 실적보고와 연간계획을 세울 때 저와 긴밀하게 일을 했었음.

○ (위원) ○○○ 전무님은 대표이사한테 3개년 동안 전혀 보고를 안 하셨는지?

- ▶ (진술인) 가장 중요한 단기실적보고와 연간실적 그리고 다음해의 경영계획을 보고하는 이사회였기 때문에 1년에 2번 정도 사전에 제가 자료를 들고 가서 설명을 드렸음.
- (위원) 그런데 이것이 보통 다른 안전과 달리 대표이사가 전혀 몰랐다고 얘기를 하고 있음. 3년이라는 기간 동안 몰랐다는 것이 쉽지 않은 일인데, 그것이 좀 의아스러움.
- ▶ (진술인) 아무래도 (주)○○○○○○가 상장회사로서의 면모를 일찍 갖추고 성장한 회사가 아니고 학원에서 출발해서 온 회사였기 때문에 학원 사업을 총괄하는 대표님은 회계에 대해서는 저를 전반적으로 믿고 다 맡긴 편이었다고 생각을 함.
- (위원) 포렌식 보고서 작성할 때 조사는 받으셨는지?
- ▶ (진술인) 네. 받았음.
- (위원) 그런데 포렌식 보고서에 따른 금감원의 주장을 보면 ○○○ CFO께서 회계팀장에게 이 이슈(issue)에 대해 지시를 했다는 것 같음. 회계팀장은 보고를 했다, 그리고 또 하나는 가결산 관련해서 보고를 하면 실적 걱정을 많이 했다는 표현들이 많이 나왔다는 것임. 그러니까 회계팀장이나 회계팀의 구성원들은 CFO께서 이런 저런 얘기를 하면 그것을 회계분식 하라는 지시로 받아들인 것 같음.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 ▶ (진술인) 그런 면이 지금 생각해 보면 있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저희 회의실의 분위기는, 일단 회계팀장 밑에 있는 직원들하고는 제가 얘기할 일이 전혀 없었음. 제가 제 조직원들을 많이 데리고 하는 회의가 팀장들 회의였고 손익조정은 회계팀장하고만 회의를 했음.
- (위원) 회계팀장의 사실확인서는 어떻게 받으신 것인지?
 - ▶ (진술인) 사실확인서는 제가 회사로부터 금번의 조사과정에서 회계팀장이 했던 얘기라든지, 사전조치에서 제가 얘기했던 일관된 진술이라든지, 증거라든지, 이런 것들이 받아들여지지 않아서 이것은 회계팀장이 바로 잡을 수밖에 없겠다고 생각해서 제가 사전조치 이후에 연락을 해서 “사실관계에 맞게 이런 것들을 밝혀줬으면 좋겠다.”고 해서 작년 12월에 받았음.
- (위원) 기본적으로 가장 큰 이슈가 회계처리 위반에 대한 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임. 지금 출석하신 ○○○ CFO인지 아니면 회계팀장인지를 저희가 판단해야 될 가장 큰 사항임. 그런데 지금 회계팀장의 발언이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사실확인서를 청구하셨다고 하는데 사실확인서의 내용도 보니까 왔다 갔다 하고 있음.
 - ▶ (진술인) 맞음.
- (위원) 불리한 내용과 유리한 내용이 같이 혼재되고 있는데, 예를 들어 두 번째 사실확인서 보면 ‘○○○ 전무는 연간

영업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목표를 갖고 있는 것으로 보였고, 그 목표가 달성되지 않으면 1차, 2차, 3차 형식으로 본인의 목표수준에 만족할 때까지 실적을 조정해 보자고 요청했습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시는지?

- ▶ (진술인) 그런데 제가 1차, 2차, 3차까지 조정을 했던 경우는 상장 첫 해여서 2017년초에 “조정할 것이 없는지 한번 봐라.”하고 상장 첫 해라는 것 때문에 욕심을 낸 부분은 좀 후회스러운데 보통은 1번 정도밖에 조정 안 했음. 지금 생각해 보면 제가 “학생 수가 늘었고 우리가 건물도 사고 임대상가도 하나 샀는데 왜 이렇게 이익이 많이 안 늘었느냐?” 물어보면 자기가 놓친 것이 있었다는 식으로 한 번 정도 조정해서 옴.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부정확한 방법으로 했다든지 이런 얘기 없이 알아서 조정을 해 오니까 저는 할 만한 것을 했나보다 하고 생각을 했었던 것임.
- (위원) 3차까지는 아니고 한 1, 2차 정도는 조정을 했다는 것인지?
- ▶ (진술인) 맞음. 1번 정도임. 그런데 지금 선수금이라든지 그런 것도 보면 제가 조정할 때는 우리 회사에 이익이 분기별로 한 20~30억 원 됐으니까 한 1~2억 원만 내려도 비율(percentage)이 많이 올라가니까 분기별로 1~2억 원 정도 더 조정할 수는 없느냐고 물어보는 수준이었는데 지금 만져온 것을 보시면 그런 수준이 아님.

○ (위원) 이 내용을 보면 회계팀장님은 전무님의 기대수준을 맞추기 위한 압박을 느꼈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정리를 하면 전무님은 직접적인 지시를 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를 그냥 그렇게 만든 것이 아닌가, 그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는지?

▶ (진술인) 그 분위기라는 것이 그냥 서로가 공유하고 있는 것임. 본인이 경영계획도 그렇게 세웠음.

○ (위원) 회계처리 위반한 시기에 대해 금감원에 질의 드리겠음. 동기 판단 근거를 보면 前회계팀장의 진술에 따르면 2016년 1분기 결산 과정에서 前재무담당임원이 2분기 매출을 미리 당겨오자는 지시를 했다는 것이 적시가 되어 있음. 그러면 이것에 의하면 2016년부터 했다는 얘기인데, 2016년부터 한 것이 맞는지 2017년부터 한 것이 맞는지?

- (보고자) 2016년부터 한 것이 맞음.

▶ (진술인)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 잘 해 주셨다고 생각함. 제가 2017년초에 마지막으로 좀 아쉬웠던 4~5억 원을 그 친구가 조정했다는 얘기를 들었을 때 선수금을 건드렸다고 해서 그것도 모호한 부분을 건드렸다고 그랬는데, 2017년 1분기에 당연히 그 선수금 때문에 모자라는 것임. 왜냐하면 2017년 1분기 금액을 2016년 말로 당겨왔으니까 당연히 제가 기대했던 것보다 안 나옴. 그래서 “모호했던 부분이라고 했는데 그것을 당긴 것이었어?” 그랬더니 당긴 것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임. “그러면 1분기, 2분기는 감사받지 않고 그것을 네가 당겨놓은 것 때문에

2017년 1분기가 비니까 일단은 분기는 그만큼만 당겨놓고 나중에 가서 여분 넣고 하자.” 그렇게 얘기했는데 그 친구는 모든 사람이 다 “왜 그런 일을 저질렀느냐?”고 말을 하니깐 그런 선언을 한 것이라고 생각함.

○ (위원) 지금 말씀을 들어보면 분기에 대해서는 연간은 안 되지만 감사가 없는 1분기에는 외부감사를 받지 않으니까 2분기 매출을 당겨 잡자고 했고, 그러면 분기별 분식은 적법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시는지?

▶ (진술인)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했다고 생각함. 그런데 그 친구가 그렇게 말한 것처럼 2016년도에 먼저 제가 선수금 당겨오자고 한 것은 절대 사실이 아님.

○ (위원) 그러면 여기 오시기 전에 모회사인 (주)○○○○에서 CFO 역할은 안 하셨는지?

▶ (진술인) 2년간 했었음.

○ (위원) 어떻게 보면 모회사에서 자회사의 재무회계 관련된 전체적인 것을 통제하기 위해서 파견된 것으로 인식을 해도 되겠는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러면 ○○○ 대표뿐만 아니라 소유주(owner)인 ○○○씨한테도 보고를 했다고 보면 되는지?

- ▶ (진술인) 소유주(owner)한테 한 것은 아니고 이사회에 (주) ○○○○ CFO와 그 당시 회장님이셨던 ○○○ 회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사회를 통해서 같이 공유가 된 것임. 그 외에 다른 보고는 없었음.
- (위원) 저는 회계팀장이 예산과 실적의 차이가 많이 나면 불이익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것이 선뜻 이해가 잘 안 되고, 그다음에 CFO가 한 행위도 잘 이해가 안 됨. 금감원은 CFO가 주도적으로 했다, 5% 성장이 되면 CEO가 모회사에서 자기주식을 받는다, 그것을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했다고 함.
- ▶ (진술인) 그것은 아닌 것 같음.
- (위원) 아까 2017년 1분기에 선수금 10억 원을 당겨 잡았다는 것을 알았다고 했음.
- ▶ (진술인) 그것이 나중에 연말에 가서 10억 원이었고 그때 당시에 5억 원이었음.
- (위원)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되는 것이 5억 원이면 숫자를 풀어놓고 한번 맞춰보지는 않는지? 말을 하면 그냥 말 그대로 수공을 한 것인지?
-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그러면 이 10억 원이라는 부분은 2017년도 언제 알게

되신 것인지?

▶ (진술인) 그것은 2017년도에 제가 그 전부를 가져오라고 했을 때 분기별로 계속 더 늘려서 10억 원이라고 저한테 축소해서 보고한 것임.

○ (위원) 그 시점은 언제인지?

▶ (진술인) 2018년 1월임.

○ (위원) 그런데 왜 정정(correction)을 안 하셨는지?

▶ (진술인) 저희가 분기영업이 20~30억 원 되는데 5억 원을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또 이쪽의 실적이 확 비어버림.

○ (위원) 저는 이 회사의 기업 문화(culture)가 선뜻 이해가 잘 안 됨. 어쨌든 사건이 발생이 된 것이니까, 그리고 학원 수장비는 선수금을 받는 구조임.

▶ (진술인) 맞음.

○ (위원) 그다음에 그것은 강의를 들어야 수익으로 인식이 되는 것인데, 매출을 당겨 잡아서 선수금 금액이 확 줄어드니까 2017년 12월에는 그런 선수금 받은 것이 없다, 2018년 1월에 전부다 결재한다고 해서 학원 관련된 안내문(pamphlet) 조작된 그 자료를 감사인한테 제공을 함. ○○회계법인한테 왜 이것을 몰랐느냐고 했더니 조작된 자료를 받

으니까 몰랐다고 하는데 그 조작을 누가 했는지?

- (보고자) 행위자는 ○○○ 팀장이 한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음.

○ (위원) 그 사실을 CFO께서는 모르고 계셨는지?

▶ (진술인) 저는 그런 것을 2019년초에 지정감사 받을 때 알게 됐음.

○ (위원) 매출 부분은 그렇고, 퇴직급여충당금 부분은 제가 조금 정리해야 될 부분이 K-IFRS에서는 미래추계방식으로 이 사람이 계속 근무해서 추산을 하는 방식인데, 강사에 대해서 회사는 과거 방식으로 했음. 1년 미만 근무자는 제외시키고, 현시점의 퇴직급여충당금을 계상하고 거기에 2017년도에는 동 금액의 80%만 퇴직급여충당 부채로 계상했음. 맞는지?

▶ (진술인) 맞음.

○ (위원) 이 내용을 ○○회계법인은 알고 있었는지? 의견진술에 ○○회계법인과 다 얘기된 것이다, 그런 말이 나와서 물어보는 것임.

▶ (진술인) 저는 회계팀장이 인사팀장과 같이 그런 부분의 자료를 만들어서 ○○회계법인에 설명했다고 들었기 때문에 이것은 선수금처럼 속일 문제가 아니라 생각했음.

○ (위원) 회계처리기준 위반인지에 대한 인식이 없었다는 말씀

인지?

▶ (진술인) 그러함.

○ (위원) 80%부분도 그렇다는 것인지?

▶ (진술인) 그것까지는 몰랐음.

○ (위원) 금감원은 이 부분에 대해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 (보고자) 그 당시에 강사는 법적으로 사업자인데 실질적으로는 근로자로 근무를 하고 있었음. (주)○○○○○○의 강사들을 보면 대부분 법정근로시간 주5일, 8시간 이상 그런 식으로 일반적인 근로자와 동일한 근무조건을 가지고 있었음. (주)○○○○에서 외국인 강사들이 퇴직급여 소송을 해서 근로자와 비슷한 조건을 가진 강사들은 다 근로자로 봐서 퇴직급여를 지급하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났었음. 그래서 모회사의 대법원 판결문을 자회사가 받았고, 자회사가 감사인에게도 제출을 했음. 그래서 감사인도 이미 강사에 대해서 근로자로 보고 퇴직금추계액을 계산해야 된다는 사실을 인지하였지만 ○○회계법인은 회사가 퇴직금추계액을 K-IFRS에 따라서 금액을 계산해야 되는데 회사가 임의로 예전 방식을 사용한 것이 위법임을 알았음에도 계산을 해 보지도 않고 중요성 금액보다 낮겠지 라고 임의로 판단을 해서 넘어간 것임.

○ (위원) 그러면 모회사의 경우에는 K-IFRS 방식으로 2015년

부터 퇴직금을 계산한 것이 맞는지?

- (보고자) 모회사는 K-IFRS 방식으로 했음.

○ (위원) 이것은 2015년 판결로서 이미 다 정리가 된 것이어서 K-IFRS방식으로 해야 되는데, ○○회계법인이 왜 그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회사가 자료제공은 다 했는데 검토를 안 하고 넘어갔던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런데 ○○○의 최초 진술서가 12월에 있었고 그다음에 또 보충 진술서가 있는데 이 보충진술서는 어떤 경위로 누가 받은 것인지?

▶ (진술인) 감리위 직전에 제가 의견서를 달라고 해서 감리위 직전에 제출을 한 것임.

○ (참여자) 그 보충의견서는 진술인께서도 읽어보셨는지?

▶ (진술인) 그러함. 그 친구의 입장도 있고 금감원에서 감리 방해죄로 고발하겠다고 해서 자기가 이렇게 쓸 수밖에 없었다고 얘기를 해서 그냥 “알겠다.”고 했음. 저로서는 제가 힘들게 받은 의견서를 정면으로 반박하는 내용들이 많아서 참 힘들다는 생각을 했음.

○ (참여자) 최초 확인서 작성은 함께 하신 것인지?

▶ (진술인) 맞음.

- (보고자)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사 진술로는 ○○○ 전무가 다 써와서 본인은 서명(sign)만 했다고 했음.

▷ 두 번째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 팀장은 검찰통보 대상에서 왜 제외된 것인지?

- (보고자) 실무자이고, 담당임원의 지시에 의해서 위법행위를 한 것으로 저희는 판단했음.

- (보고자) 지금 ○○○ 전무가 부인을 해서 위원님들께서 혼란스러우실 것 같은데 처음에 포렌식 조사할 때, ○○○ 이사한테 물어봤을 때는 “○전무가 어떻게 했느냐?”고 했더니, “2016년 1분기 실적이 예상보다 좋지 않다고 판단하셨는지 2분기 매출을 가져오자”고 했다고 문답서에 쓰여 있고, 그다음에 ○○○ 전무 인터뷰를 했는데 “회계팀장, 회계팀원 등 직원들에게 회계 조정을 명시적으로나 묵시적으로 지시한 적이 있나요?” 라고 물었더니 ○○○이 “2017년초에 2016년 실적 관련해서 5억 원 정도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요청했다고 생각한다.”고 대답을 했음. 그래서 제가 이 보고서를 보고 나서 저희 금감원 문답 시 물어봤음. “당신이 문답 시에 2016년 실적 관련해서 5억 원 정도 조정할 부분이 있는지 찾아보라고 했다고 하는데 왜 그랬느냐?”, “5억 원 정도 실적을 조정해 보라고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인가

요?” 하고 물었더니 “당시 2016년 실적이 전년 대비 순이익 부족금액이 10억 원 정도였습니다.”라고 하면서 이후로 설명을 함. 그런데 이 순이익 부족금액이 10억 원이라는 것이 2015년의 영업이익이 87억 원이고 2016년에 정정 후, 그러니까 분식회계 다 빼낸 금액으로 77억 원 정도로 딱 10억 원이 차이가 남. 그러니까 2015년 대비 2016년의 영업이익이 -10억 원 정도가 부족해서 이런 일을 지시했다고 보면 금액이 정확하게 일치할 함. 저희가 분식회계를 드러낸 후의 금액과 정확하게 일치하기 때문에 ○○○ 전무가 이 숫자를 알았다고 볼 수밖에 없음. 만약에 ○○○ 전무가 이 금액을 몰랐다고 하면 2016년의 금액이 지금 113억 원으로 영업이익이 2016년보다 거의 20억 원이 늘어났음. 그렇게 늘어났는데 10억 원 정도 부족했다는 진술은 나올 수가 없음.

- (보고자) ○○○이나 회사 측에서는 ○○○가 예산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인적으로 분식을 한 것 같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그렇게 되려면 2015년에도 예산을 달성하지 못했음. 사실 ○○○가 그런 인물의 유형이었다면 2015년부터 분식을 했어야 됨. 그런데 2016년부터 분식을 한 것은 ○○○ 전무가 (주)○○○○에서 내려온 다음부터 분식이 시작된 것임. 그러면 대표이사가 지시하지 않았는데 ○○○이 왜 중심이 되어 분식이 이루어졌다고 금감원은 생각하느냐 하면, ○○○ 대표이사라는 분은 (주)○○○○○○를 설립해서 지분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벌었음. 그래서 경영보상계약이라고 그때 당시 주가로 7억 5,000만 원 정도인데 저희가 ○○○ 대표이사 문답할 때 그 정도 돈은 자기한테 중요하지 않다고 했음. 그래서 대표이사 ○○○은 확실히 절연이 되어 있고 그렇다면 ○○

○이 중심이 되어 이 분석이 이루어졌다고 저희가 보는 이유는 경영보상계약을 달성해 주면 ○○○ 대표이사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은 것임. 그래서 ○○○ 입장에서는 대표이사한테 충성을 하는 것이 있고, 그다음에 그때 당시 모회사 (주)○○○○의 영업이익이 계속 감소하고 있었음. 2013년 영업이익이 159억 원, 2014년에 113억 원, 2015년에 69억 원, ○○○은 (주)○○○○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모회사 (주)○○○○이 어떤 상황인지를 잘 알고 있었음. 그래서 영업이익을 올려야만 되는 상황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음. 그래서 그렇게 해서 영업이익을 달성하면 두 마리 토끼를 다 잡는 것임. ○○○ 대표이사한테도 잘 보이고 모회사로 부터도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입장에 있었다고 저희는 보는 것임.

○ (위원) 회사 측의 진상조사보고서와 포렌식 보고서가 같은 것인지?

- (보고자) 진상조사보고서 안에 포렌식 자료가 있는 것임.

○ (위원) 저희가 이 부분을 검토할 수 있게 자료를 주시면 좋을 것 같음. ○○○ 이사는 우리가 진술을 요청할 수 없는지? 진술을 듣고 싶는데 우리가 이해관계인의 진술을 요청할 수 있음. 실질적으로는 두 사람을 대질하고 싶는데, 한쪽 말만 듣는 것은 아닌 것 같음. 수고스럽지만 ○○○ 회계팀장한테 진술요구서 요청을 해 보시기 바람.

○ (위원)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우리가 항상 보면 결국 임원이 주로 제재되고 실제 행위를 한 직원들은 제재가 안 되니

가 직원들은 항상 진술서로 모든 절차가 완료되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제재를 받는 임원의 입장에서는 편파적일 수 있음.

- (위원) 저는 두 분 위원님과 다르게 원안대로 의결해도 별무리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함. 결국에는 회계처리기준의 위반주체가 누구냐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관건인데 얘기를 쪽 들어보고 정리를 하면 결국에는 ○○○ 대표이사도 우회 (by pass)를 했고, (주)○○○○○○ 오기 전에 모회사인 (주)○○○○의 CFO를 했다고 함. 그러니까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음. 그래서 저는 원안의결하는 것에 큰 무리가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임.
- (위원) 저는 일단 금감원이 이 건에 대해서 충분히 조사를 많이 하신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합니다만, 포렌식 보고서도 위원님들께서 직접 보시면 납득을 하실 것임. 그리고 ○○○ 대표이사나 ○○○ 회계팀장은 틀림없이 이해당사자이니까 그분들 출석을 요청해서 오늘 듣지 못한 것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질문을 하고, 그렇게 한 후에 결론을 내려도 크게 문제가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함.
- (참여자) 위원님들이 궁금해 하시는 부분은 확실하게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기 때문에 일부 자백 아닌 자백을 하면서 고의 인정하는 부분이 있다고 하더라도 사건을 명확하게 결론을 짓는 것이 맞다고 생각함.
- (위원) 포렌식 보고서를 저희도 한 번 보고, 우리가 증선위의 절차의 정당성을 확보·강화할 수 있음. 그리고 또 하나

는 이해관계인들 진술요구서 통보하고 출석을 요청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음. 그다음에 오늘 코로나19 때문에 출석하지 못한 ○○○ 대표이사의 의견도 들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만장일치로 보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18시09분 정회)

▷ 증선위원장 퇴장(증선위 상임위원이 이어서 회의주재)

(18시25분 속개)

□ 의결안건 제154호 『(주)청담러닝의 사업보고서 및 연결감사보고서 등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당사는 (주)○○○○○○의 지배회사로서 (주)○○○○○○에서 발생한 금번 회계오류 및 그로 인한 당사 연결재무제표의 오류에 대하여 사죄의 말씀을 드림. 당사는 어린이 및 청소년 영어학원 시장을 선도하고 있는 영어교육전문기업으로 2008년 코스닥시장에 상장하였음. 이후 2012년 수학전문학원인 (주)○○○○○○를 인수하였지만 (주)○○○○○○의 설립자인 ○○○ 대표이사에게 실질적이고 독립적인 경영권을 보장해 왔음. 당사의 회계담당

실무자는 (주)○○○○○○의 재무제표를 연결하는 과정에서 동사 재무제표에 유의미한 변동이 있었는지를 분석하였고 필요한 경우 (주)○○○○○○ 회계담당자에게 설명을 요구하는 등의 절차를 거쳤으나 특별한 문제점을 발견할 수 없었고 (주)○○○○○○의 감사인이 '적정' 의견을 표명하였기 때문에 이를 신뢰하였음. 당시 당사의 감사인이었던 ○○회계법인 역시 적절한 감사절차를 수행하였고 연결재무제표에 대해 '적정' 의견을 표명하였음. 이후 당사는 (주)○○○○○○로부터 재무제표에 오류가 있다는 사실을 전달받고 즉시 외부감사인인 ○○회계법인에 이를 알렸고 내부조사와 함께 외부전문가를 통해 포렌식 절차를 철저히 수행하였음. 이 과정에서 오류의 내용을 파악하였고 스스로 정정공시를 수행하였음. 당사는 본 건 감리의 원인이 된 종속회사 회계위반 미반영 이슈(issue)를 완전히 해소하면서 이와 동시에 사업적 관점에서도 당사와 종속회사 간 사업의 시너지 효과를 위해 심도 있게 합병 계획을 논의해 왔음. 당사는 (주)○○○○○○의 재무제표 오류를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한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책임을 통감하며, 당사에 대한 조치는 위원님들의 현명한 판단과 결정을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선처 부탁드립니다.

- ▶ (진술인) 과징금을 부과 받을 만큼 회사가 (주)○○○○○○ 회계처리에 대해서 감독을 소홀히 하였는지 다소 의문이 있음. (주)○○○○○○는 2016년에 코스닥에 상장되었고 문제가 된 2016년 재무제표는 초도감사인의 면밀한 감사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류가 발견되지 못했음. 회사는

(주)○○○○○○○ 대하여 설립자인 ○○○ 대표이사에게 독립적인 경영권을 보장하면서도 (주)○○○○○○○에 대해서 경영진단을 하였고 이사회 참석하였고 재무제표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는 등 충실히 감독하였음. 특히, 금감원 감리에서 확인된 것처럼 (주)○○○○○○○ 대표이사조차도 동사 재무제표의 오류를 알지 못한 것으로 확인되었고 어떠한 제재조치도 받지 않았음. 따라서 회사가 (주)○○○○○○○의 재무제표 오류를 발견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과연 과정금까지 부과하는 것이 타당한지에 대하여 위원님들의 깊은 검토를 부탁드립니다.

○ (위원) 진술서를 보면 결국에는 연결과 관련되어 (주)○○○○○○○의 회계책임자를 ○○○ 회계팀장으로 적시하고 있으신데, ○○○ 전무는 관련이 없는 것인지?

▶ (진술인) ○○○ 전무는 당시 (주)○○○○○○○의 CFO로서 회계재무보고의 최종 책임자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책임이 있다고 생각됨.

○ (위원) 그런데 진술서에는 ○○○에 대한 얘기는 거의 없고 계속 실무자인 회계팀장에 대한 얘기만 있음.

▶ (진술인) 저희는 (주)청담러닝 연결재무제표가 문제된 건임. ○○○ 전무는 (주)○○○○○○○의 CFO이고 (주)청담러닝에는 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주)청담러닝의 연결재무제표와는 관련이 없으신 분임.

- (위원) 아까 이사회에도 참여를 했다고 하셨는데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는데 있어서 ○○○ 전무와의 접촉(contact)은 없었는지?
- ▶ (진술인) 재무결산을 위해서 재무제표를 입수 받은 것도 있지만 저희가 다른 절차를 가지고 분석적 검토나 유·무상에 대한 추가적인 질의를 했을 뿐이지, 그 안에 있는 원장에 대한 정보 같은 것은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주)청담러닝의 입장에서는 ○○○ 전무와의 정보 교환은 굉장히 제한적이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음.
- (위원) 실제로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해야 되기 때문에 모회사의 경우에는 통상 종속회사와 회계법인을 일치시키려는 경향이 있음. 지금 보니까 (주)○○○○○○ 같은 경우에는 회계인력도 부족하고 인력(Man Power)도 많이 떨어지는 것 같은데, (주)청담러닝의 경우에는 ○○회계법인이 회계감사를 하는데 왜 (주)○○○○○○는 ○○회계법인이 하고 있는지? 그래서 퇴직급여충당금 같은 것도 회계법인이 제대로 파악을 못하고, 이런 상상하기 어려운 실수가 벌어졌는데, 감사인을 일치시키려는 노력은 없으셨는지?
- ▶ (진술인)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주)○○○○○○의 설립자인 ○○○ 대표이사의 독립경영을 보장해 주다 보니까 감사인 교체 부분에 대한 것도 진행되지 않았던 것 같음.
- (위원) 지금은 어떠한지?

- ▶ (진술인) 지금은 말씀하신 것과 같은 위험(risk)을 없애기 위해서 동일 감사인이 지배회사와 종속회사를 다 감사하는 것으로 감사계약을 체결하고 있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장) 앞의 안건과 꼭 연계되어 있다고 볼 필요는 없을 것 같으나, 앞선 사안과 적어도 사실관계에 대해서는 부수적으로(depending) 연계되어 있는 상황이니 제153호 안건이 확정되는 대로 같이 조치하는 것으로 하고 제154호 안건은 보류하도록 하겠음.
- 보류하는 것에 동의함.

⇒ 보류함

□ 의결안건 제155호 『(주)○○○○○○(舊, (주)○○○○○○) 등 3사의 회계관련 부정행위 신고자에 대한 포상실시안』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회계조사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복수신고자 관련 검토’가 나오는데 한 사람은 받고 한 사람은 못 받아서 어떻게 보면 좀 억울할 수 있을 것 같음. 시간적 우선순서만 고려를 하시는 것 같은데 포상규정 제5조제1호 보면 포상금 지급요건의 신고요건을 앞선 신고내용이 충족을 하면 뒤의 신고내용은 전혀 고려하지 않는다

는 내용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주)○○ 건도 직접적인 관련성은 없다고 하지만 430억 원 중에 69.5억 원을 실제로 공동사업에 투자한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혀 기여한 바는 없다고 우리가 봐야 되는 것인지?

- (보고자) 기재되어 있는 것처럼 회계부정 신고내용은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혐의와 관련하여 저희가 이미 검토 중인 사항이었고, 검찰에서도 대여금 횡령 혐의에 대해서 수사 중인 것으로 저희가 이미 파악을 하고 있었음. 그리고 이 허위확인서를 제시했다는 사실만으로는 저희가 횡령 사실을 단정할 수도 없었고 결과적으로 저희가 대손충당금 과소계상 금액을 산정하는 것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포상금 지급 제외를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하였음.

○ (위원) 이 제보와 관계없이 감리착수는 어떻게 하게 된 것인지?

- (보고자) 감리착수는 저희가 심사감리로 2018년에 최대주주가 2회 이상 변경되는 위험요소에 의해서 착수를 하게 되었음.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32호 『○○○ ○○○○ ○○○○○○에 대한 ○○○○ 방안 보고』를 재상정하여 금융감독원 감사인감리실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향후 계획을 보면 '경미한 사항 미공개 근거, 개선권고사항 외부공개 업무의 금감원 위탁 등 관련법규 개정'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시행령 아니면 외감규정 개정으로 되는 것인지?

- (보고자) 시행령 개정사항으로 오늘 입법예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위원) 기본적으로 이후에도 매년 연차보고서 형태로 공개를 할 예정이고 한공회 것도 연차보고서 형태로 공개하기로 했고 그래서 당연히 2019년, 2020년 것도 (2안)으로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음. 2019년, 2020년 연차보고서를 작성하시더라도 예컨대 '가군'의 경우 2021년 것은 4개사 다 끝냈음. 한 바퀴(cycle) 돌았음. 그다음에 2022년, 2023년이 한 주기(cycle)인데 2023년에 연차보고서를 작성할 때, 예컨대 '가군'에 동일한 주기(cycle)에서 이전에 검사를 했던 ○○회계법인이나 ○○회계법인에 대한 것은 요약본이라고 하더라도 굉장히 간략하게나마 참고사항으로 연차보고서에 적시를 해 주시면 별도로 2022년을 안 찾아보고 2023년 것만 보더라도 비교가 가능할 것 같음. 그래서 기본적으로 (2안)으로 가되, 동일한 주기(cycle)에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참고사항으로 적시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것이 저의 의견임.

- (보고자) 저희들도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음. 직전에 감사받은 동일군에 대한 공개내용을 요약제공하고 세부내용은 직전공개보고서를 참조하도록 기술을 할 예정임.
- (위원) 저도 (2안)에 동의하고, 자료 11페이지의 '(감리주기) 중형 중 일부: 2년, 기타법인: 3년'이라고 적시되어 있는데, 目目, 田田, △△, ▽▽ 이런 곳이 '나군' 중에 상당히 큰 곳 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2년씩 하는 것 저는 적극 지지함.
- (위원) 제도개선사항이나 이런 것들은 증선위에서 위원님들이 계속해서 말씀하신 사항들을 매우 잘 반영했다고 생각하여 이견은 없음. 그런데 외부 공개방안과 관련해서 맨 처음에 보고했던 안과 지금 위원님들께서 찬성해 주신 안과의 차이가 무엇인지?
- (보고자) 당초에는 주로 건수와 개선권고 내용만 간략하게 기재하는 것이었는데 공개할 때 전체적인 품질관리감리라는 것이 무엇이나, 연간감리개요라든지, 중점감리사항은 무엇이었고, 전체적인 통계 측면에서 '가군·나군·다군·라군' 간의 차이는 무엇인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상세히 기술하는 쪽으로 보완했음. 그리고 또 의견 주신 것 중에 하나가 지적사항뿐만 아니라 우수한 사례들에 대해서도 같이 제공을 해서

중·소형사들이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으로, 공개하는 내용을 좀 더 상세하게 보완했음.

- (위원) 공개 내용이나 이런 부분들이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사항을 반영해서 충분히 보완되고, 개선되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결국 공개대상과 관련해서는 이것이 원안 아닌지?

- (보고자) 원안에서는 이것을 1년에 한 번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상반기, 하반기로 나누어서 1년에 2번 할 것인지에 대해 저희들이 명확하게 적시를 못했었는데 이번에 수정안을 올리면서 연간단위로 하고 최초 2019년, 2020년 것을 금년에 한 번 공개하는 것으로 명확하게 했음.

- (위원) ‘가군’의 경우에는 4개사가 이미 감리가 완료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당초 문제가 있다고 지적되었던 것이 ‘나군’, ‘다군’, ‘라군’. 즉, 각 그룹 내에서의 공개 형평성 이런 부분을 지적했던 것 같음. 그래서 ‘나군’ 중에 일부, ‘다군’ 중에 일부, ‘라군’ 중에 일부인데 이 ‘나군’, ‘다군’, ‘라군’에 대해서 일부만 먼저 공개할 경우 그 ‘군’ 내에서 해당되는 회사들만 지적사항이 있고 나머지는 지적이 안 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즉, ‘군’ 내에서의 회계법인간 형평성에 대해서 우려를 했던 의견도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음. 어쨌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불가피한 측면이 있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룹 내의 형평성이라는 측면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어 보이는데, 금융위원회 기업회계팀과 금감원이 사전에 협의를 하셨는지?

- (보고자) ‘군’ 내에서 모든 회사를 한꺼번에, 현실적으로 감리를 한꺼번에 다 할 수 없어 연간에 나누어서 조금씩 할 수 밖에 없는데 그 부분에 관해서는 불가피하게 감리한 회사에 대해서, 개요에 의해서 원래 이 회사만 감리를 했기 때문에 이 회사에 대해서 개선권고사항을 공개한다는 것을 명확하게 하고, 그다음에 금융위 기업회계팀과는 이 부분에 대해 논의를 했었는데 사실 그 부분 관련해서 금융위 쪽에서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군의 감리가 모두 종결되었을 때 하는 것이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냐고 해서 (1안) 쪽으로 많이 말씀하셨는데 저희들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지만 (2안)으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해서 두 (안)을 같이 올리게 되었음.
- (위원) 저는 (1안)이 현실적으로 접근하는 방법인데 시간차가 너무 긴 것 같음. 거의 3년인데, 우리가 3년 주기로 하면 전체 회계법인들 군별로 품질관리감리 주기(cycle)가 돌게 되는지?
- (보고자) 앞으로는 그렇게 계획하고 있음.
- (위원) 3년에 한 번씩 공개가 되니까, 유사한 타회계법인이 공개되면 “우리 회사도 이런 것이 있으니까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품질개선의 효과는 있으리라고 보임. 회계법인별로 먼저 공개되는 곳이, 이것이 칭찬하는 것이 아니고 지적하는 것이니까 지적되지 않은 회계법인보다는 먼저 지적된

회계법인이 평판에 있어서는 조금 손해를 보는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음. 그런데 그것은 선택의 문제라고 보이는데, 저는 '가군·나군·다군·라군'이 워낙 대동소이(大同小異)하게 되어 있어서 이것을 2022년에 가서 한꺼번에 하면 품질관리에 대한 개선의 효과가 너무 늦어지니까 그런 우려가 있는 것 같음.

○ (위원) 기업회계팀, 의견은 어떠한지?

- (보고자) 형평성과 적시성 측면에서 (1안)과 (2안)이 각자의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았음.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형평성을 좀 더 재고한다는 측면에서 (1안)을 선택했으면 하는 바람이 컸는데 금감원의 (안)도 나름대로 적시성이라는 장점이 있어서 같이 놓고 논의를 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두 (안)을 같이 올려드렸음.

○ (위원) 공개 시기는 우리 증선위가 판단하면 되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이것은 공개하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이고 나중에 2019년과 2020년의 감리가 완료된 건에 대해서 개선권고안에 대해서 심의하실 수 있음. 그때 어떻게 공개할 것인지도 결정하실 수 있음.

○ (위원) 그렇다면 그때 반영하면 되니까 다른 모든 개선방안과 관련해서 오늘 금감원에서 보고한 대로 접수하되, 공개 시기와 관련해서는 조금 더 논의를 해서 따로 결정하는 것으로 하는 것이 어떠신지?

- (위원) 알겠음.
- (위원) Big4의 경우 2022년에는 ○○회계법인과 ○○회계법인만 하고, 2023년에는 나머지 2개사만 하면 2022년과 2023년을 합해서 2023년에 해야 되는 것 아닌지?
- (위원) 그러니까 완전히 형평성을 재고한다면 군별로 다 했을 때 한꺼번에 해야 됨.
- (위원) 그것이 지금 (1안) 아닌지?
- (위원) 최초 감리한 것은 한꺼번에 공개를 하고 그다음부터는 연차로 공개를 하겠다는 얘기인지?
- (보고자) 그러함.
- (위원) 그러니까 최초 공개의 문제인 것인지?
- (보고자) 맞음. 원칙이 연간단위 연차보고서인데 최초 공개는 형평성을 좀 더 감안한다는 차원임.
- (위원) (1안)으로 가면 '다군', '라군'의 경우에는 2019년, 2020년에 한 것을 2023년에 공개하는 상황이 발생함.
- (위원) ○위원님 말씀대로 조금 더 생각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음.

○ (위원장) 보고안건 제32호는 금감원 최초 (안)대비 오늘 제출된 안건으로 수정접수하되, 공개시점과 관련해서는 추가적으로 논의해서 공개시점 관련한 안건을 올릴 때 다시 논의하는 것으로 하겠음.

○ 수정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수정접수*함

* 만장일치로 수정접수를 의미함(표결이 있는 경우 별도 표기)

□ 의결안건 제156호 『(주)○○○○○○ 주식에 대한 시세조종행위 등 조사결과 조치안』을 상정하여 금융위원회 자본시장조사단장 직무대리가 내용을 설명함.

※ 진술인이 입장하여 의견 진술함.

▶ (진술인) (주)◇◇◇◇◇◇◇◇ ♥♥♥♥♥에서 근무하는 D 부장임. 제가 (주)○○○○○○○라는 종목을 알게 된 것은 2017년 11월쯤임. 당시에 (주)○○○○○○○는 세계최초로 패드 인쇄 공법을 개발하여 ◎◎◎◎에 납품하는 특수잉크 전문회사로 2017년 2분기부터 실적도 반등하여(turn around)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유망한 회사로 보였음. 2018년초 즈음에 (주)○○○○○○○라는 회사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기 위하여 지점 직원 몇 명과 함께 (주)○○○○○○○ 기업탐방을 하였고 당시 (주)○○○○○○○의 F 사장, A 회장을 처음 만나 인사를 하였음. 이후 기업의 퇴직연

금 유치, 자산유치 등 영업적인 목적으로 몇 차례 방문한 적은 있음. 이것은 제가 (주)○○○○○○의 사무소 등을 방문한 것은 증권회사 지점의 영업직원으로서 영업목적이었고, A 회장과는 영업적인 부탁을 하기 위해 가끔 전화를 걸었던 관계에 불과함. 증권회사 영업점 아침 회의시간에 서로 종목을 발표하면서 회사가 발전가능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그 종목을 매수하기도 하고 회사 현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기업탐방도 가는 것이 일상임. 기업탐방을 가면 경영진과 인사도 나누고 자금유치 등을 위한 영업활동도 함. (주)○○○○○○도 일반 영업활동과 별반 다르지 않았음. 자산관리 영업을 하는 증권회사 직원이 기업의 관계자를 만나고 전화했다고 하여 그것으로 무슨 지시를 받았다, 무슨 부탁을 받았다고 추정할 수는 없다고 봄. (주)○○○○○○의 A 회장 역시 저에게는 영업대상인 회사의 대표 중에 한 명이었음. 조치원인 사실에 기재된 주문수행과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음. 2018년 9월경 퇴직연금 및 자금유치 영업대상이던 (주)○○○○○○에 근무하는 E 차장이 연락이 와서 개인명의의 계좌를 개설하겠다고 하여 계좌개설을 도와주었음. 그리고 계좌개설일에 바로 자기계좌에 예탁금을 입금하였고 저에게 유선으로도 주식주문이 가능한지 물어왔으며 가능하다고 하니 (주)○○○○○○ 종목의 매수를 요청하였음. 저는 단순히 자기회사의 장래성을 생각해서 주식을 사는 것으로 알고 계좌주가 유선으로 주문을 요청한 바에 따라 주식을 매수하게 된 것임. 계좌개설일에 바로 주문을 요청하여 이를 수행하지 않을 수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별다른 의심 없이 주문을 수행한 것뿐임. 이후 계좌개설일로부터 3일간 매수주

문을 요청하였고 이후 2개월 뒤에 일부 매도·매수 주문을 하여 이를 수행하게 되었던 것임. 고객의 요청을 받아 딱 3일 매수한 행위와 몇 달 뒤 일부 매도와 매수한 행위가 시세조종행위 위반이라는 큰 후폭풍으로 닥치리라고는 추호도 생각해본 적이 없었음. 고객으로부터 총 매매금액을 지정받고 수령, 가격, 시기에 대한 투자판단을 일임 받아 당일 중으로 매매를 함에 있어 혹시라도 일일거래량에 비하여 요청 수량이 많아 주가의 변동성을 우려하여 분할하여 매수해 드렸으며 이것이 시장의 주가에 영향을 최소화 하면서 고객의 주문을 소화하는 최선의 방안이라 판단하여 주문을 수행한 것뿐임. 당시에 큰 오류임을 인지하지 못하였거나 명확한 법적 인지가 부족했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다만, 저의 이러한 주문수행 행위가 시세조종행위 금지 위반이라는 사실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였음. 법에 위반되는 행위를 하려는 어떠한 의도나 목적이 있었던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알려주셨으면 함.

○ (위원) 진술하실 때 A씨는 지인이라고 하였고, B씨도 아시는 분인지?

▶ (진술인) 기업탐방을 가서 알게 되었음.

○ (위원) E씨가 A씨 운전기사라는 사실은 인지하고 계셨는지?

▶ (진술인) 나중에 알았음.

○ (위원) 계좌 개설 했을 때는 A 회장의 운전기사인 것을 아

셨는지?

▶ (진술인) 정확히 (주)○○○○○○○ 직원인지 아닌지는 제가 확인할 수 없었습니다만 추측은 했었음.

○ (위원) E씨가 계좌를 몇 개 개설하셨는지?

▶ (진술인) 종합계좌로 해서 01, 02, 03 해서 3개의 계좌를 개설했음.

○ (위원) 01, 02, 03 각 계좌에 얼마씩 예탁금이 들어왔는지?

▶ (진술인) 3억 원씩 들어왔음.

○ (위원) 그러면 기본적으로 생각하셨을 때 물론 개인적인 재산이 많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한 분이 9억 원의 자금을 가지고 주식을 시작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하지 않으셨는지?

▶ (진술인) 좀 이상은 했습니다만 자금이 2시반 넘어서 늦게 들어왔고 바로 매수주문을 요청해서 그냥 주문했음.

○ (위원) 지금 (주)○○○○○○○ 주식을 D씨와 고객들이 한 27만 주 정도 보유하고 있었던 것으로 적시되어 있는데, 당시에 본인과 본인이 관리하는 고객들이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었던 주식이 (주)○○○○○○○였는지?

- ▶ (진술인) 그렇지는 않았음. 전체 포트폴리오 중에서 일부만 고객들한테 편입을 했음.
- (위원) 어느 정도인지?
- ▶ (진술인) 고객들이 많은데 일부 고객들만 했기 때문에, 제가 전체 관리하는 자산이 한 500억 원 정도 됐었음.
- (위원) 27만 주면 그 당시에 시총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 ▶ (진술인) 주가가 9,500원이었음. 그런데 E 계좌가 9만 주 정도 되니까 그것을 빼면 20만 주 정도 됐을 것 같음.
- (위원) 3일간의 집중적인 거래기간 중에 매수주문 중 90% 이상을 시세조종성 주문으로 판단하고 있음. 그 내용은 알고 계시는지?
- ▶ (진술인) 거래가 10만 주 정도 밖에 안 됐음. 제가 이 종목만 매매한 것이 아니고 다른 업무도 하다보니까, 계속 이것만 매수한 것이 아니고 매도호가 주문 나오면 5분이면 5분 단위로 해서, 기본수량을 사야 됐기 때문에 매도호가에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음.
- (위원) 주문이 고가매수, 물량소진 등등 여러 가지 있지만 통정매매라는 것은 아주 죄질이 안 좋은 것임. 일반 시세조종이 아니면 통정매매를 할 이유도 없고 하지를 않는데, 거기에 통정매매도 17회가 포함이 되어 있음.

- ▶ (진술인) 저는 나와 있는 주문에서 거래량이 작다보니까 1,000주 사고 2,000주 사고 이렇게 샀던 부분이지, 상대방을 전혀 모르는 상황임.
- (위원) 어쨌든 여기 '통정매매'라고 표시가 되어 있는데 그런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시는 것인지?
- ▶ (진술인) 그러함. 전혀 처음 듣는 얘기임.
- (위원) 1억 원 상당의 (주)○○○○○○○ CB를 진술인께서 인수하고 A로부터 3,000만 원 차용 받았는지?
- ▶ (진술인) 그것은 (주)○○○○○○○가 거래정지 되면서 제가 받은 것이 아니고 저의 처(妻) 계좌였는데 2019년 7월30일에 거래정지 되면서 제가 담보가 부족해서 4시 반에 여기저기 계속 다 전화해서 한 8,000만 원 정도 차용을 했었음. 그것은 1년 뒤의 얘기임.
- (위원)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A씨와 상당히 밀접한 관계였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임.
- ▶ (진술인) 자사주 매입도 하고 계좌가 들어오고 하니까 1년 뒤에 방문을 했던 것임. B 부장한테 갑자기 거래정지가 되기 때문에 너무 돈이 급해서 형님들한테 돈 빌리고 동생한테도 빌리고, 같은 날 8,000만 원을 하고 나중에 시차를 두고 조금씩 다 갚았음.

▷ 진술인이 퇴장함.

○ (위원) 통정매매 부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고자) 진술인 D는 A회장이 “나도 주식을 매수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진다. 네가 공격적으로 매수를 해 달라.”고 해서 D는 부인하고 있지만 A 회장쪽에서 주식을 조금씩 매수한다는 인식은 있었음. A 회장은 충분히 D가 주식을 매수하고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A 회장의 범죄일람표에 이 통정매매가 들어감. 그런데 D 입장에서 통정매매가 과연 들어갈 것이냐, 안 들어갈 것이냐, 그 부분에 대해서는 D가 부인하고 있지만 저희는 A 회장도 주식을 매매하고 있었기 때문에 인식이 있었던 것으로 판단했음. 결론적으로 검찰에서 이 통정매매 부분만 기소할지 말지를 판단할 것 같음.

○ (위원) A는 그렇게 했다는 사실을 지금 시인하고 있는 것인지?

- (보고자) 그러함. “공격적으로 매수해라. 나도 지금 하고 있는데 주가가 떨어져서 걱정이다.”라는 문답에서 말하고 있음.

○ (위원) 우리가 논의하고 있는 사람들 이외에 G, H, I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등장을 하는데 이분들에 대해서는 검찰에 정보보고나 이런 것들도 다 안 하는 것인지?

- (보고자) 단지 계좌를 빌려준 것임.

- (위원) 적극적으로 거래를 한 것이 아니라는 말씀인지?
 - (보고자) A가 B한테 지시해서 B가 G와 H, 밑의 직원을 통해서 지시하는데 가격과 수량을 다 지정해 줌. 그래서 G와 H는 고발사항 내용에서 뺐음.

- (위원) 정보보고사항에도 해당되지 않는 것인지?
 - (보고자) 맞음.

- (위원) 시세하락을 방어한 경우에 부당이득 산정에 대해서 하락되지 않은 주가와 하락방어 주문이 없을 경우 주가의 차이를 부당이득으로 산정하는 산식이 있는데, 기술하시기를 하락방어 주문이 없을 경우 주가가 산정불가해서 부당이득에 대한 금액산정이 안 된다고 얘기하셨음. 그러면 하락방어 주문이 없을 경우의 주가는 거의 대부분의 경우에 산정이 불가능한 것인지?
 - (보고자) 맞음. 실제로 말씀드리면 주가를 상승시키면 최고점의 기준에서 실현이익과 미실현이익을 다뤄서 이익이 나오는데 하락방어는 기준점이 없음. 그래서 계산이 안 나옴.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38호 『(주)○○○ 주식에 대한 미공개정보 이용행위 긴급조치 결과보고』 를 상정하여 서면보고로 갈음함.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 의결안건 제157호 『유경피에스지자산운용(주)의 대주주 변경승인안』 을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산운용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원안의결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의결함

□ 보고안건 제39호 『키움증권(주)의 마스틴제110호전문투자형사모 부동산투자회사 사후 출자승인 신청건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 를 상정하여 금융감독원 자본시장감독국장이 내용을 설명함.

○ (위원) 얼마의 기간 내에 사후 출자승인을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지?

- (보고자) 인수부터 언제까지로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인수한 회사의 주주총회 전까지만 출자승인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음.

○ (위원) 주주총회가 언제 있는지?

- (보고자) 보통 사모펀드들은 주주총회를 운용사 변경이나 보수수수료 인상 등의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만 소집하게 됨. 현재 이 회사는 아직 주총 소집계획이 없음.

○ 원안접수하는 것에 동의함.

⇒ 원안접수함

나. 폐회선언

위원장이 2021년도 제14차 증권선물위원회 회의의 폐회를 선언함.

(20시13분 폐회)